



2025년 한전KDN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현장실사 보고서

출연 기업/기관	한전KDN
중소기업 (협력사)	(주)에스비엘
수행기관	한국표준협회

1. 기업현황

1-1. 일반현황

기업명	(주)에스비엘	설립일자	2011-10-19
업종	제조업	대표이사	박선자
주 생산품 / 서비스	LED 채널 사인 제품	사업자번호(법인번호)	410-86-54240
매출액	5,919,604,889	종업원수	17
주소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 91		
기업개요 (설립목적 등)	(주)에스비엘은 LED사인 제품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안전성과 품질 혁신으로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인웨어(Signware)분야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경영방침 (비전, 전략 등)	-비전 : Signware Business Leader -경영방침 : 안전 관심 변화 소통 -전략 : 벤처, 기술혁신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반 체계적 운영 -환경 및 안전방침 SG 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수립 스마트 채널사인용 전력/조도 센서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 개발 폐자재 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위한 친환경 연구 개발
기업 연혁	2025년 06월 : 수출100만불 달성 2024년 03월 : LG전자 사인 물 협력 업체 선정 2018년 01월 : KT커머스 사인물 협력업체 선정 및 환경 경영 시스템 (ISO14001)인증 2013년 06월 : 기아자동차 크롬 성형 및 우리은행 아크릴 채널공급업체 선정 2012년 12월 : 독일 WESTIFORM 국내 협력업체 및 SK텔레콤 아크릴 채널 공급 업체 선정 2011년 10월 : 엘이디조립 및 특수아크릴가공 전문기업 (주)에스비엘 법인설립 (광주 우산동)		
인증취득 현황 (환경, 안전, 품질 등)	2012년 09월_특허 등록(광고 용 문자 판 시스템 10-1186037) 2015년 08월_ISO9001(품질) 2018년 02월_ISO14001(환경) 2019년 07월_ISO45001(안전 보건) 2025년 05월_Main-Biz(경영 혁신) 06월_Inno-Biz (기술 혁신) 07월_벤처기업		

1-2. 주요 제품(서비스) 및 공정 (업무) 프로세스

주요 제품 서비스 사진

주요 제품 사진

LG 전자 채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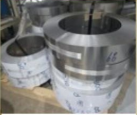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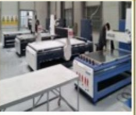
KT & SKT 채널 사진




현대 / 기아 & 테슬라 채널 사진



공정/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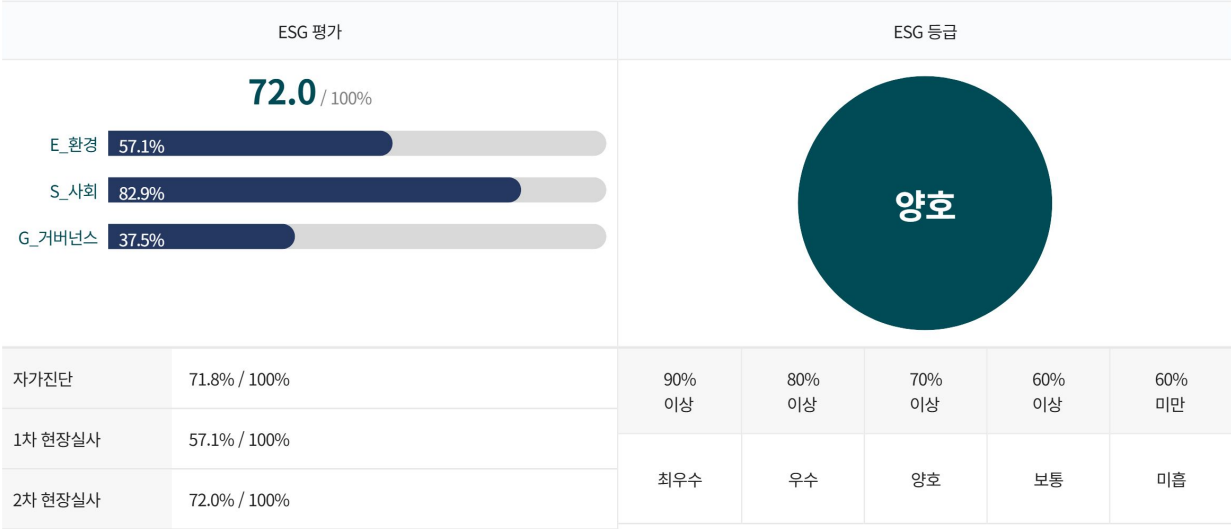
공정 프로세스							
공정순서		1	2	3	4	5	6
공정도시 기호							
공정명		원자재 입고	원자재 가공	제작	조립	검사 및 포장	출고
변압기공정	공정 사진						
	설명	원자재 입고	원자재 가공	주요부품 제작	주요부품 조립	품질 검사	제품 출고

공정 프로세스							
공정순서		1	2	3	4	5	6
공정도시 기호							
공정명		원자재 입고	원자재 가공	제작	조립	검사 및 포장	출고
변압기공정	공정 사진						
	설명	원자재 입고	원자재 가공	주요부품 제작	주요부품 조립	품질 검사	제품 출고

대분류명					
구분	지표명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억원	52	49	59
전체인원	전체	명	15	15	16
	정규직	명	15	15	15
	계약직	명	0	0	0
남성		명	11	10	11
		%	73	67	69
여성		명	4	5	5
		%	27	33	31
평균연령		세	38	39	40
장애인수		명	0	0	0
노동조합 가입자수		명	0	0	0
노동조합 가입률		%	0	0	0
산업재해자수		명	0	0	0
산업재해율		%	0	0	0
동종업계평균		%	0.75	0.75	0.75
임원 임원수		명	3	3	3
이사회 구성(감사 포함)	전체	%	100	100	100
	사외	%	63	63	63
	여성	%	37	37	37
이사회 개최회수		회	0	0	0
이사회 출석률		%	0	0	0
건강검진수진율		%	100	100	100
육아휴직취득자		명	0	0	0
전력사용량(전사)(공장)		kwh	1,093,199	936,761	1,260,292
연료사용량(전사)(공장)		kl	0	0	0
공장연료원단위(제조종량당)		l/t	0	0	0
CO2배출량(전사)(공장)		t-CO2	522.66	447.87	602.55
SCOPE 1		t-CO2	0	0	0
SCOPE 2		t-CO2	0	0	0
공장CO2원단위(제조종량당)		t-CO2/t	0	0	0
용수 사용량		천m3	0	0	0
폐수 사용량		천m3	0	0	0
원재료 사용량		천t	0	0	0
포장재 사용량(플라스틱/종이/알루미늄/유리)		천t	0	0	0
폐기물 배출량(일반)		천t	0	0	0
폐기물 배출량(지정)		천t	0	0	0
폐기물 리사이클량		천t	0	0	0
유해화학물질사용량		t	0	0	0
환경법령위반 벌금횟수		회	0	0	0
환경법령위반 벌금액		천원	0	0	0

2.ESG 진단결과

2-1. ESG 평가 및 등급



2-2. ESG 종합수준 평가 코멘트

- 에너지 절감과 자원 효율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 순환 활동이 점차 강화됨
- 온실가스와 전력 사용량 관리 체계가 미흡함
- 주요 환경 지표의 측정과 관리 체계가 내실 화 필요
-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위한 내부 지침 마련 필요
- 중장기 환경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체계 보완 필요

2-3. ESG 영역별 진단결과

ESG 진단결과				준수율		해당없음	준수율 (해당없음 제외)
대항목	세부항목	맞춤지표	진단지표	예	아니요		
E_환경	이해관계자 일반	6	4	3	1	2	75.0%
	지역사회	3	1	1	0	2	100.0%
	고객	3	2	0	2	1	0.0%
소계		12	7	4	3	5	57.1%
S_사회	근로자1 (근로조건)	18	13	12	1	5	92.3%
	근로자2 (작업환경)	17	15	15	0	2	100.0%
	협력사	5	4	1	3	1	25.0%
	이해관계자 일반	3	3	1	2	0	33.3%
소계		43	35	29	6	8	82.9%
G_거버넌스	주주	3	2	1	1	1	50.0%
	협력사	2	2	1	1	0	50.0%
	이해관계자 일반	4	4	1	3	0	25.0%
소계		9	8	3	5	1	37.5%
합계		64	50	36	14	14	72.0%

2-4. ESG 수준 평가 종합 요약

환경 (Environment)
평가의견
사업장 내 에너지를 식별하고 사용량을 기록 관리하여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 활동이 추진되고 있음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 순환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환경 목표의 주기적 평가 체계 확립과 ISO14001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속적 개선과 체계적 관리 필요 온실가스 및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정량적 모니터링과 감축 목표 설정 필요 녹색 구매 방침 수립과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를 위한 실천 계획 필요 환경 성과 지표의 측정, 평가, 내부 보고 체계 정착 필요 중장기 환경 경영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확립 필요
사회 (Social)
평가의견
인권 경영 헌장이 제정되고 취업 규칙에 퇴직·해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근로자 권익이 보호됨 임금 명세서가 세분화되고 연장, 야간 근로 산출 근거가 명시되어 급여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됨 근로시간·임금·복지제도 등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 차별 없는 인사 운영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공정 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 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관리 규정 운영으로 정보 보호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안전 보건 경영 방침과 추진 목표를 운영하며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법정 의무 교육 및 위험성 평가 이행을 통해 근로자 안전 의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지속적 점검이 요구됨
거버넌스 (Governance)
평가의견
윤리 경영 지침을 수립하고 공정 거래 기반을 마련하여 투명한 경영 추진 주요 경영 정보 공유로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영 의사결정의 절차와 기록 관리 체계화 개선 필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비윤리 사항, 고충 및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립 필요 ESG 정책과 과제 도출 정례화 보고 및 피드백 체계 보완 필요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기준과 대응 체계 수립 필요

이해관계자 일반 > 공통 > E 1-01

공통	이해관계자 일반							
E 1-01	환경관리체계							
지표 내용 (평가 기준)	환경경영방침과 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환경경영 실천 의지를 담은 환경경영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실적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 K-ESG
		6.5.1	308	E2-1~3	CM	10B4.7	E-1-1, E-1-2	E-1-1~3
	국내법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제8조, 제10조, 환경보건법 제5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점검사항	점검	☐ 환경경영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 ☐ 연도별 환경경영 목표 설정 및 측정지표 수립 내용 ☐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내용 ☐ 경영진의 주기적 평가 및 성과점검 사항					
보조		☐ 환경경영시스템 국제규격(ISO 14001 또는 EMAS) 인증 여부						
자가진단	아니오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환경 경영 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 방침을 게시하고 있지 않음 환경 경영 방침과 연계된 환경 경영 전략 및 연도 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측정 가능한 환경 경영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하는 성과 측정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2차 실사	환경 경영 방침을 수립하여 직원과 공유하고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문서로 유지 함 환경 경영 방침과 연계된 환경 경영 전략 및 연도 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함 측정 가능한 환경 경영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 지표 관리 체계를 구축 함							
개선 Comment	환경경영방침'이란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시된 환경성과와 관련된 기업의 종합적인 의도 및 방향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환경경영 목표'는 기업이 환경경영방침과 일관성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의 배정을 함께 해야 함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을 실행 하는 데 있어 모든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와 활동을 파악하고 각 구성원이 책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 경영 목표 및 계획을 전 구성원과 공유 해야 함							

E 1-01

환경관리체계

(주) 에스비엘	환경경영매뉴얼	문서번호	제정일자	2017.10.10
	환경경영방침	SBL-EM-01	개정번호	
			개정일자	
			페이지	

환경경영방침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를 지켜내고자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에스비엘은 열아디 조립 및 특수아크릴 가공 등의 작업을 통해 사인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주)에스비엘 대표이사 박선자

이해관계자 일반 > 공통 > E 1-02

공통	이해관계자 일반																																																	
E 1-02	에너지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에너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table border="1"><tr><td>지표설명</td><td colspan="6">-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td></tr><tr><td>글로벌지표</td><td>ISO 26000</td><td>GRI</td><td>ESRS</td><td>RBA</td><td>SMETA</td><td>K-ESG</td><td>공급망K-ESG</td></tr><tr><td></td><td>6.5.4</td><td>302</td><td>E1</td><td>C6.1</td><td>10B4.6</td><td>E-4-1, E-4-2</td><td>E-3-1.2</td></tr><tr><td>국내법</td><td colspan="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제10조, 제31조, 제32조, 제65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 제14조</td></tr><tr><td rowspan="2">점검사항</td><td colspan="3" rowspan="2">점검 ☐ 에너지원 식별에 따른 원단위 사용량 측정 및 기록 관리 사항 ☐ 에너지원단위 향상계획 수립 및 주기적 성과 점검 여부 ☐ (다소비 사업자) 신고 및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에너지 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 등</td><td colspan="3" rowspan="2">☐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관리지표 수립 내용 ☐ 에너지이용 효율화 관련 조치 및 활용 내역 ☐ (해당 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사항 내역 ☐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계획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td></tr><tr></tr><tr><td>보조</td><td colspan="6">☐ 신재생에너지 도입 또는 프로그램 참여 ☐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규격(ISO 50001) 인증 여부</td></tr></table>						지표설명	-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5.4	302	E1	C6.1	10B4.6	E-4-1, E-4-2	E-3-1.2	국내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제10조, 제31조, 제32조, 제65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 제14조						점검사항	점검 ☐ 에너지원 식별에 따른 원단위 사용량 측정 및 기록 관리 사항 ☐ 에너지원단위 향상계획 수립 및 주기적 성과 점검 여부 ☐ (다소비 사업자) 신고 및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에너지 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 등			☐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관리지표 수립 내용 ☐ 에너지이용 효율화 관련 조치 및 활용 내역 ☐ (해당 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사항 내역 ☐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계획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보조	☐ 신재생에너지 도입 또는 프로그램 참여 ☐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규격(ISO 50001) 인증 여부					
	지표설명	-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5.4	302	E1	C6.1	10B4.6	E-4-1, E-4-2	E-3-1.2																																										
	국내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제10조, 제31조, 제32조, 제65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 제14조																																																
점검사항	점검 ☐ 에너지원 식별에 따른 원단위 사용량 측정 및 기록 관리 사항 ☐ 에너지원단위 향상계획 수립 및 주기적 성과 점검 여부 ☐ (다소비 사업자) 신고 및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에너지 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 등			☐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관리지표 수립 내용 ☐ 에너지이용 효율화 관련 조치 및 활용 내역 ☐ (해당 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사항 내역 ☐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계획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보조	☐ 신재생에너지 도입 또는 프로그램 참여 ☐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규격(ISO 50001) 인증 여부																																																	
자가진단	아니오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에너지원에 대한 개별 사용량 기록 관리 하지 않음 원가와 연계한 전력 등 에너지 사용 금액을 파악 하지 않음 에너지 사용량 관리 데이터 미흡으로 구체적인 절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2차 실사	에너지원(전력, 수도) 사용을 원가로 인식함과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함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여 기록 관리 분석 함 연도 에너지원 절감 목표를 수립하여 원가 절감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목표 관리를 시작 함																																																	
개선 Comment	사업장 내 에너지원을 식별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조치 및 활동을 해야 함 에너지원 별 사용량에 대해 측정, 기록, 보고, 방안 제시(회사 현황 판), 사용량 관리 대장, 절감 계획 등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계층 별로 에너지 관리 지표를 선정하여 에너지를 사용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프로그램(재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으로 진전 시키는 것 포함)을 수립,실행해야 함																																																	

이해관계자 일반 > 공통 > E 1-03

공통	이해관계자 일반																																		
E 1-03	온실가스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 활동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table><tr><td>지표설명</td><td colspan="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측정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td></tr><tr><td>글로벌지표</td><td>ISO 26000 6.5.5</td><td>GRI 305</td><td>ESRS E1</td><td>RBA C6.1</td><td>SMETA 10B4.6</td><td>K-ESG E-3-1, E-3-2, E-3-3</td><td>공급망K-ESG E-3-1-3-4</td></tr><tr><td>국내법</td><td colspan="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27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제29조, 제32조</td></tr><tr><td>점검사항</td><td>점검</td><td colspan="4">☐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에 따른 원단위 배출량 산정 및 기록 관리 내용 ☐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관리지표, 저감계획 수립 및 주기적 성과 점검 내용 ☐ (관리업체) 배출량 명세서 및 감축목표 이행계획서 ☐ (해당 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량 관리대장, 이행실적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td></tr></table>					지표설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측정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5.5	GRI 305	ESRS E1	RBA C6.1	SMETA 10B4.6	K-ESG E-3-1, E-3-2, E-3-3	공급망K-ESG E-3-1-3-4	국내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27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제29조, 제32조							점검사항	점검	☐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에 따른 원단위 배출량 산정 및 기록 관리 내용 ☐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관리지표, 저감계획 수립 및 주기적 성과 점검 내용 ☐ (관리업체) 배출량 명세서 및 감축목표 이행계획서 ☐ (해당 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량 관리대장, 이행실적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지표설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측정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5.5	GRI 305	ESRS E1	RBA C6.1	SMETA 10B4.6	K-ESG E-3-1, E-3-2, E-3-3	공급망K-ESG E-3-1-3-4																											
	국내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27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제29조, 제32조																																	
점검사항	점검	☐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에 따른 원단위 배출량 산정 및 기록 관리 내용 ☐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관리지표, 저감계획 수립 및 주기적 성과 점검 내용 ☐ (관리업체) 배출량 명세서 및 감축목표 이행계획서 ☐ (해당 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량 관리대장, 이행실적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자가진단	아니오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온실가스 배출 원 (직접 배출, 간접 배출)에 대한 대상과 기준을 확립 하지 못하고 있음 배출 원에 대한 식별을 하지 못함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 량 산출 석유 환산 톤(toe) 및 배출량 계산을 할 수 없음 배출 원 에 대한 대상과 기준의 부재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가 없으며, 주기적 성과 점검도 없음																																		
2차 실사	온실 가스 배출 원에 대한 대상과 기준 확립을 통한 온실가스배출관리규정 수립을 준비 하고 있음 회사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기록 미비 로 연계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근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 규정 이행 위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저감 계획 수립, 성과 점검 활동을 실행 하여야 함																																		
개선 Comment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업체 지정 기준_온실가스 배출량(업체기준_50,000TOE), 사업장 기준(15,000TOE) - 업체 기준: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 최근 3년간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 및 소비한 량 - 사업장 기준: 업체 개별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배출량 및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 = 활동자료 × 배출계수 × 지구온난화지수(GWP)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총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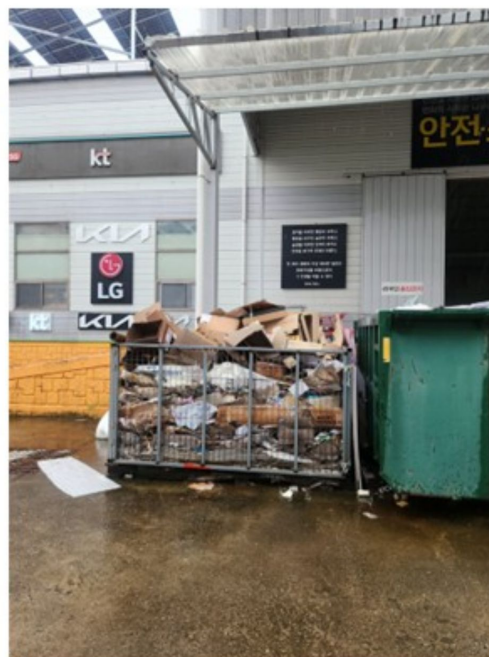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일반 > 공통 > E 1-04

공통	이해관계자 일반							
E 1-04	환경영향평가							
지표 내용 (평가 기준)	환경영향을 파악하며 환경관련 법규 위반, 행정조치, 지역사회 민원 및 부정적 언론보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주요 환경측면을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오염 행위에 의해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5.2.1	GRI 2-27, 413	ESRS E2-6	RBA CM1.2	SMETA 10B4.11	K-ESG E-8-1	공급망K-ESG
	국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7조, 제22조, 제34조~제36조, 제42조, 제43조						
	점검사항	점검	☐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및 관리 내용 ☐ 환경법규 미준수로 인한 행정조치 발생 여부 및 조치 내용 ☐ 부정적 환경영향으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제기 여부 및 조치 내용 ☐ 부정적 환경영향 관련 언론기사 노출 여부 및 조치 내용 ☐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제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나 사고 위험이 없어 환경 영향 평가 필요 없음 LED 간판 제조상 특성 상 환경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별도 관리 필요 없음 업종 특성 상 환경 법규 위반이나 사고 위험이 없어 추가적 환경 영향 평가나 재발 조치 내용 없음							
2차 실사	생산 공정에서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 환경 피해 발생 요인이 없음 사업 수행 과정에 환경 법규 위반 및 환경 사고 유발할 사항이 없음 향후 사업 규모가 확대 되어 환경 법규 위반 및 환경 사고 발생 우려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주요 환경 측면을 고려 해야 함							
개선 Comment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경우,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오염 행위에 의해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활동을 지속 실시해야 함							

이해관계자 일반 > 업종별 > E 1-05

업종별	이해관계자 일반																																	
E 1-05	환경인· 허가																																	
지표 내용 (평가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인· 허가를 취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table border="1"><tr><td>지표설명</td><td colspan="6">-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필수적인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법적 인허가 요구사항 준수 및 변경사항에 대해 관리해야 합니다.</td></tr><tr><td>글로벌지표</td><td>ISO 26000 4.6</td><td>GRI 2-27</td><td>ESRS C1.1</td><td>RBA 10B2.1</td><td>SMETA K-ESG E-1-4</td><td>공급망K-ESG</td></tr><tr><td>국내법</td><td colspan="6">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하수도법 제34조, 약취방지법 제8조 등,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td></tr><tr><td>점검사항</td><td colspan="6"> 점검 ☐ 환경오염물질 관리 대상 목록 ☐ 환경오염물질 대상 인·허가 취득 및 변경 관리 서류 ☐ (통합관리사업장)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내역,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연간보고서 등 </td></tr></table>						지표설명	-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필수적인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법적 인허가 요구사항 준수 및 변경사항에 대해 관리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4.6	GRI 2-27	ESRS C1.1	RBA 10B2.1	SMETA K-ESG E-1-4	공급망K-ESG	국내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하수도법 제34조, 약취방지법 제8조 등,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점검사항	점검 ☐ 환경오염물질 관리 대상 목록 ☐ 환경오염물질 대상 인·허가 취득 및 변경 관리 서류 ☐ (통합관리사업장)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내역,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연간보고서 등					
	지표설명	-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필수적인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법적 인허가 요구사항 준수 및 변경사항에 대해 관리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4.6	GRI 2-27	ESRS C1.1	RBA 10B2.1	SMETA K-ESG E-1-4	공급망K-ESG																											
	국내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하수도법 제34조, 약취방지법 제8조 등,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점검사항	점검 ☐ 환경오염물질 관리 대상 목록 ☐ 환경오염물질 대상 인·허가 취득 및 변경 관리 서류 ☐ (통합관리사업장)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내역,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연간보고서 등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LED간판제조 공정 특성 상 환경 오염물질 신고 대상이 없으며 유해성 및 위해 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상이 없음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법규 상 필수 환경 인 허가 대상이 없음																																	
2차 실사	회사 공정 특성 상 환경 오염물질 신고 대상이 없음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음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법규 상 필수 환경 인허가 대상이 없음																																	
개선 Comment	사업자가 오염 물질 배출 시설물 설치 및 관련 행위 등을 하기 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환경 인 허가를 실시함 기업은 제품의 생산을 포함한 제반 행위에 대해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영 활동에 있어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법규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및 규제 사항의 개정 동향 및 변동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해야 함																																	

공통	이해관계자 일반								
E 1-06	폐기물								
지표 내용 (평가 기준)	폐기물의 발생원을 식별하여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 등을 파악하여 법규에 따라 처리(사업장일반·지정·건설폐기물에 따른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해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법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며 적절한 관리 절차(분류, 표시, 취급, 보관, 운송, 처분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5.3	306	E5-5	C3.1	10B4.2, 10B4.6	E-6-1	E-4-3
	국내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5조, 제35조, 제38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2조						
점검사항	점검	☐ 사업장폐기물 발생 저감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 내역 ☐ 위탁 시 관리사항(위·수탁 계약서/허가증/수탁처리능력 확인서/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서류) ☐ (집단지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처리실적 보고서 ☐ 건설폐기물 관리사항(건설폐기물 관리대장/처리계획서/배출 및 처리·재활용 실적보고서)							
		☐ 사업장폐기물 관리사항 (공통사항 포함) (관리대장/처리현장정보 내역/배출·처리 실적보고서/담당자 교육/처분부담금) ☐ 지정폐기물 관리사항(폐기물 확인 내역/처리계획 확인서류/배출·처리 실적보고서/유해성 정보자료) ☐ (현장 확인) 사업장폐기물 보관 및 관리 상태 (보관장소 및 부착 게시를 포함)							
자가진단	아니오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사업장 내 폐기물은 발생 하지 않으며 생활 폐기물 위주로 종량제 봉투를 활용 해 처리 하고 있음 사업장내 분리 함을 설치하여 종류 별로 분류 하여 처리 하고 있음을 확인 함(광주 철거 환경 전표 확인)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은 분류 하여 재 활용 하고 있음								
2차 실사	사업장 내 지정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외 포장박스, 포장 비닐 등 폐기물을 관리 하고 있음. 폐기물 중 알루미늄은 분류 하여 전량 재활용 되고 있음을 확인 함 폐기물 감소 활동과 자원 재활용 활동을 연구소 중심으로 진행 하고 있음								
개선 Comment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 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함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 값, 위치 정보, 영상 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정보 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50710-702510-11547761			
발행 처 명 세 금 회 사	발행 번호	536-09-00555	회사명 번호	발행 번호	410-86-5420	회사명 번호		
	성명 (법인명)	이동통신망진흥원	성명	이동통신망진흥원	성명	주식회사	성명	주식회사
	세무 등록 번호	충북세무서 관세번호 145-15(충청북도)	세무 등록 번호	충북세무서 관세번호 145-15(충청북도)	세무 등록 번호	충북세무서 관세번호 145-15(충청북도)	세무 등록 번호	충북세무서 관세번호 145-15(충청북도)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
	이메일	coms0114@naver.com	이메일	coms0114@naver.com	이메일	coms0114@naver.com	이메일	coms0114@naver.com
계좌번호	계좌명	계좌	계좌명	계좌	계좌명	계좌	계좌명	계좌
2025-07-10	500,000	500,000	계좌명	계좌명	계좌명	계좌명	계좌명	계좌명
발 행 일	발행 금액	국지	수량	단가	금액	세액	비고	
07-10	충주세무서 관세번호				500,000	60,000		
계좌명				계좌	계좌	계좌	계좌	계좌
500,000								계좌명 (계좌명)

업종별	지역사회								
E 2-07	대기오염								
지표 내용 (평가 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하고 법정 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사업장 발생 대기오염물질은 그 물질의 종류, 발생량을 파악하여 배출시설의 인허가를 받고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허용총량 이하로 배출하기 위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비산배출시설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법정 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관리기준 등에 따라 저감 및 필요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5.3	305-7	E2-4	C4.1	10B4.1	E-7-1	E-5-1-2
	국내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77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7조, 제40조						
	점검사항		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 및 실행 내역 ☐ (해당 사업장) 비산배출 운영기록부/연간 점검보고서/정기점검 결과서 ☐ (해당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 시설 운영 현황 ☐ (현장 확인) 배출시설 및 저감시설 가동상태/측정기기 부착운용 상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사항 - 자가측정 및 반기별 제출 여부 - 운영기록부 기록 및 전산입력 내용 -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해당 사업장)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해당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자동량 조사표 작성 및 제출 내용					
자가진단	아니오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요인이 적어 전반적 관리 상태는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 대기 오염 배출 가능성이 낮고 기본적인 설비 점검과 관리로 법적 기준 요건을 충족 하고 있음 측정 및 기록 관리 체계와 전반적 환경 관리 의식 수준이 높음								
2차 실사	사업장의 대기 오염 측정(그린환경종합센터장, 25.7.25일)을 통해 대기 오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 대기 오염 배출 가능성이 낮고 기본적인 설비 점검과 관리로 법적 기준 요건을 충족 하고 있음 측정 및 기록 관리 체계와 전반적 환경 관리 의식 수준이 높음								
개선 Comment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배출 허용 총량 등 법적 기준을 인지하고 환경 법규 준수를 위한 점검 활동을 해야 함 작업 중 발생하는 미세 먼지 중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 먼지에 대한 측정 및 기록 관리로 대기 오염 물질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 함								

E 1-07

대기오염

㈜그린환경종합센터
Green Environment Complex Center

주) 57992 전남 순천시 영달1길 53 / Tel. 061)903-1266 Fax. 061)903-1264
http://www.gecc.co.kr / E-mail : dntrk0314@gecc.co.kr

대기측정기록부 발송

문서번호 GECC-AS-2025-0572
측정일 2025. 07. 25.
발행일자 2025. 07. 29.
수신처 주식회사 에스씨엘
담당자 대기담당자
발신처 ㈜그린환경종합센터
계목 먼지 제 1항목 측정/분석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측정시험기준(제2024-34호)에 준하여 측정·분석 하여, 의뢰한 시료에 대해 대기 검사 결과를 아래하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본 성적서는 KS Q ISO/IEC 17025:2017 및 KOLAS 인증시스템과 연계하여 발행된 문임을 알립니다.

※ 대기측정기록부 1부.

-문-

㈜그린환경종합센터장



[문서제21호서식] 발송번호 : 25-1-0009

대기측정기록부

① 상 호 [가려움]	주식회사 에스씨엘	② 업 종	
③ 소 지 자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병동산1로 9(동동)	④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⑤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⑥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⑦ 총괄 관리	김현영	⑧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⑨ 측정 항목	대기오염 측정	⑩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⑪ 측정 방법	공복 측정	⑫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⑬ 측정 위치	대기오염 측정 위치 (500m 이내) - 측정구1	⑭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⑮ 측정 시간	2025. 07. 25	⑯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⑰ 측정 시간	13:35 ~ 14:47	⑱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⑲ 측정 시간	2025. 07. 25	⑳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㉑ 측정 시간	13:35 ~ 14:47	㉒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㉓ 측정 시간	2025. 07. 25	㉔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㉕ 측정 시간	13:35 ~ 14:47	㉖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㉗ 측정 시간	2025. 07. 25	㉘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㉙ 측정 시간	13:35 ~ 14:47	㉚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㉛ 측정 시간	2025. 07. 25	㉜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㉝ 측정 시간	13:35 ~ 14:47	㉞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㉟ 측정 시간	2025. 07. 25	㊱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㊲ 측정 시간	13:35 ~ 14:47	㊳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㊴ 측정 시간	2025. 07. 25	㊵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㊶ 측정 시간	13:35 ~ 14:47	㊷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㊸ 측정 시간	2025. 07. 25	㊹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㊺ 측정 시간	13:35 ~ 14:47	㊻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㊼ 측정 시간	2025. 07. 25	㊽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㊾ 측정 시간	13:35 ~ 14:47	㊿ 인 사원총원	도정사원

① 상 호 [가려움] 주식회사 에스씨엘

② 업 종

③ 소 지 자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병동산1로 9(동동)

④ 인 사원총원

⑤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⑥ 인 사원총원

⑦ 총괄 관리 김현영

⑧ 인 사원총원

⑨ 측정 항목 대기오염 측정

⑩ 인 사원총원

⑪ 측정 방법 공복 측정

⑫ 인 사원총원

⑬ 측정 위치 대기오염 측정 위치 (500m 이내) - 측정구1

⑭ 인 사원총원

⑮ 측정 시간 2025. 07. 25

⑯ 인 사원총원

⑰ 측정 시간 13:35 ~ 14:47

⑱ 인 사원총원

⑲ 측정 시간 2025. 07. 25

⑳ 인 사원총원

㉑ 측정 시간 13:35 ~ 14:47

㉒ 인 사원총원

㉓ 측정 시간 2025. 07. 25

㉔ 인 사원총원

㉕ 측정 시간 13:35 ~ 14:47

㉖ 인 사원총원

㉗ 측정 시간 2025. 07. 25

㉘ 인 사원총원

㉙ 측정 시간 13:35 ~ 14:47

㉚ 인 사원총원

㉛ 측정 시간 2025. 07. 25

㉜ 인 사원총원

㉝ 측정 시간 13:35 ~ 14:47

㉞ 인 사원총원

㉟ 측정 시간 2025. 07. 25

㊱ 인 사원총원

㊲ 측정 시간 13:35 ~ 14:47

㊳ 인 사원총원

㊴ 측정 시간 2025. 07. 25

㊵ 인 사원총원

㊶ 측정 시간 13:35 ~ 14:47

㊷ 인 사원총원

㊸ 측정 시간 2025. 07. 25

㊹ 인 사원총원

㊺ 측정 시간 13:35 ~ 14:47

㊻ 인 사원총원

㊼ 측정 시간 2025. 07. 25

㊽ 인 사원총원

㊾ 측정 시간 13:35 ~ 14:47

㊿ 인 사원총원

지역사회 > 업종별 > E 2-08

업종별	지역사회							
E 2-08	물순환·환경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 저감 활동과 오수 등 배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사업활동의 전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과 정상적인 물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모든 폐수는 법규에 따라 처리 후 기준치(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및 점검 관리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5.3	303	E2-4, E3	C5.1	10B4.1	E-5-1,E-5-2,E-7-2	E-6-1~3
	국내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 제53조, 제62조, 제66조의2, 제67조, 하수도법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66조, 제67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점검사항	점검	☐ 용수 사용량 및 재사용량 집계 및 관리 내용 ☐ (해당 사업장) 중수도 설치 신고 내용, 처리량, 수질검사 및 지자체 통 ☐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발생량 저감계획 수립 및 연도별 관리목표 설정 보 여부 ☐ (해당 사업장)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및 운영일지 작성 내역 ☐ (해당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표 작성 및 제출 내용 ☐ 위탁시 관리사항(위수탁 계약서/허가증/인계인수내역) ☐ (해당 사업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사항 ☐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 (현장 확인) 해당 시설 운용 상태 / 측정기기 부착·운용 상태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사항						
자가진단	아니오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생활용수 에 의한 오수 량 이외에는 별도 공업 용수를 사용하지 않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생활 용수 외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발생은 없음 사업 특성 상 폐수 시설 및 방지 시설 운영 사업자가 아님							
2차 실사	사업장 용수는 사업장 근무 상근 인력이 사용하는 생활 용수(상수도) 외에는 별도 공업 용수를 사용하지 않음 해당 사업장은 별도 용수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에 의한 폐수 발생이 없음 상하수도 요금으로 용수 사용량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하고 있음							
개선 Comment	현재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물 환경 보전법에 따라 사업 활동의 전과정 에서 건강한 물환경과 정상적인 물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려는 법적이 준 및 인식을 제고 해야 함 향후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 에서 나오는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함							

소음, 진동

고객 > 업종별 > E 3-10

업종별	고객							
E 3-10	제품함유물질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제품 함유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제품에 함유되는 유해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있어 국내외의 유해물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 및 실천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6.5.2	403-2	E2-5	C2.1			
	국내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44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20조,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 2, 제49조						
	점검사항	점검	☐ 제품 함유 유해물질 종류 식별 및 그에 따른 관리 활동 내용 ☐ 제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신고 서류 및 정보제공 내역, 관리 활동 내용 ☐ 안전확인대상 생활제품 및 살생물제품 기록 및 보고 사항					
보조		☐ (수출기업) 글로벌 규제 지침(RoHS, ELV, REACH 등) 대응 내용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유해 화학물질의 위해 성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간판 제작 용 부품 제품에 유해 물질 및 유해 화학 물질 등 유해성 물질이 포함 되지 않음 제품 제작 시 제품 유해 화학물질 종류 및 관리 상태 확인 결과 해당 사항 없음							
2차 실사	간판 제작 용 기자재인 알루미늄 제품으로 체결, 접합, 조립 작업이 이루어지며 유해 화학물질 사용이 없음 제품 제작 시 제품 유해 화학 물질 종류 및 관리 상태를 확인 결과 해당 사항 없음							
개선 Comment	부품 사 MSDS 자료를 통해 제품 함유 유해 물질의 종류를 파악하고, 규정된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공통	고객							
E 3-11	친환경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제품 또는 서비스 전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이슈를 고려하여 기업과 상품의 환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기획단계부터 환경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의 창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5.2.2	417				E-9-1	
	국내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3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17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점검사항	점검	☐ 전과정 친환경 추진 활동 내용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 노력 사항					
보조		☐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친환경 활동 의무 수행 내역						
		☐ 친환경 관련 인증 보유 여부						
		☐ 녹색제품 구매율 및 사용 실적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전 과정 친환경 활동 추진 사례가 없고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계획은 없음 도장 제품에 녹색 인증 제품을 사용 한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음 저 탄소 제품 인증 자재 제품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이 요구됨							
2차 실사	사무용 기기 및 사무 용품(사무용 의자,가구,토너 카트리지 등)은 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녹색 제품 구매 확대에 대한 기본 인식은 있으나 계획 수립과 실행 수준은 미흡함 친환경 활동 필요성을 인지 하고 있으며 향후 구매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 실행 의지가 있음							
개선 Comment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 이슈를 고려하여 기업과 상품의 환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친환경 인증의 절차를 작성하여 관리를 권고함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 성 ’을 고려해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life cycle)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기획, 개발 및 설계 활동을 해야 함							

업종별	고객							
E 3-12	자원순환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의 순환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7.5.2	GRI 301	ESRS E5	RBA C2.1	SMETA 10B4.8	K-ESG E-6-2	공급망 K-ESG E-2-1
	국내법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제23조, 제45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6조, 제39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점검사항	점검	☐ 전과정 관점에서의 자원순환을 고려한 업무 적용 내용 ☐ (순환이용사업자) 순환자원 사용계획 및 이행계획, 이행실적 기록·관리 사항 ☐ (해당 사업장)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실적보고서 ☐ (해당 업종 및 대상) 폐기물부담금 납부 관련 내역 ☐ (재활용의무생산자)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보조	☐ 환경경영시스템 국제규격(ISO 14001 또는 EMAS) 인증 여부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알루미늄은 자원 재활용 하고 있으나 자원 순환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음 자원 재활용 및 자원 순환 활동에 대한 활동 사례 발굴과 정리가 필요함 사업 수행 과정 관점에서 자원 순환을 고려한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가 없음							
2차 실사	자원 재활용 및 자원 순환 활동에 대한 활동 사례 발굴과 정리가 필요함 사업 활동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 으로 이용 함으로서 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함 자원 순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 해 나가야 함							
개선 Comment	재활용(Recycle)은 폐기물을 재 사용, 재생 하거나 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함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 사항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토양, 지하수, 지표 수 등 자연 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재활용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예방· 제거 방안,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 받고 재활용을 해야 함							

S 1-01

인권현장

인권경영현장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최상의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권경영"의 이행을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여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여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 보건,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등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근로자1 (근로조건) > 공통 > S 1-02

공통	근로자1 (근로조건)									
S 1-02	사회보장보험									
지표 내용 (평가 기준)	모든 근로자는 4대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법정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에 모든 근로자들은 가입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에 따른 공제나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정부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4.4	GRI 201-4	ESRS A4.3	RBA A4.3	SMETA ILO 제102호	K-ESG S-5-1, S-5-2	공급망K-ESG S-2-1	
	국내법		국민연금법 제6조~제8조, 제90조, 제119조, 제12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7조, 제77조, 제93조, 제109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5장의3, 제10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장의 4, 제11조의2, 제1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8조의3, 제48조의6,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6							
	점검사항		점검 ☐ 국가에서 인정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자 명부							
	보조		☐ (외국인근로자 사용시 E-9, H-2인 경우) 출국만기보험, 임금채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관련 서류 ☐ (노부제공자 있을 경우) 고용, 산재보험 가입 확인 ☐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및 성별 분류, 이직률 등 고용현황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법정 4대 사회 보험 (국민 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험)에 모든 근로자 가입 확인 사업장 내 4대 사회 보험 완납 증명서 확인함 근로자 명부와 4대 사회 보장 보험 가입 명부 확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음									
2차 실사	법정 4대 사회 보험 (국민 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험)에 모든 근로자 가입하고 있음 사업장 4대 사회 보험 완납 증명서 확인함 모든 근로자는 4대 사회 보험에 따른 공제나 원천 징수 금액을 계산하여 정해진 기간에 정부기관에 납부하고 있으며, 월 별 납입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개선 Comment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비정규직, 파견직, 외국인 근로자 포함)에게 사회 보험을 제공해야 함 또한, 근로자가 부담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4대 사회 보험의 가입 거부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함 (확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http://www.4insure.or.kr(알림마당-증명서 발급))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출국 만기보험, 임금채불 보증보험, 귀국비용 보험, 상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함									

S 1-02

사회보장보험

출력일시 : 2025.08.20 17:0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발급일시		사업장 관제번호	
2025082063352		2025-08-20 17:02		41089542400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등록번호	410-06-54240	410-06-54240	410-06-54240	410-06-54240	
사업장명칭	주식회사에스비엘	주식회사에스비엘	주식회사에스비엘	주식회사에스비엘	

■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1 / 2

연번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자 격 특 록 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	571002-1-*****	국성호	-	2025.01.01	-	-
2	720205-1-*****	김현준	2016.03.07	2016.03.07	2016.03.07	2016.03.07
3	730007-1-*****	정학준	2020.02.17	2020.02.17	2020.02.17	2020.02.17
4	741103-1-*****	김영석	2013.05.02	2013.05.02	2013.05.02	2013.05.02
5	750122-1-*****	최상대	2025.01.08	2025.01.08	2025.01.08	2025.01.08
6	750726-1-*****	이형주	2024.04.01	2024.04.01	2024.04.01	2024.04.01
7	760811-2-*****	김현철	2012.01.01	-	-	-
8	810031-1-*****	김두영	2012.01.01	-	-	-
9	821006-2-*****	안지현	2024.06.01	2024.06.01	2024.06.01	2024.06.01
10	840621-1-*****	박상안	2018.07.25	2018.07.25	2018.07.25	2018.07.25
11	880626-1-*****	김용환	2020.05.28	2020.05.28	2020.05.28	2020.05.28
12	880819-1-*****	박승민	2012.12.08	2012.12.08	2012.12.08	2012.12.08
13	910221-1-*****	박승희	2019.10.07	2019.10.07	2019.10.07	2019.10.07
14	910301-6-*****	전태시아크리마비	-	-	2023.04.03	2023.04.03
15	910301-6-*****	가보시아	2023.04.03	2023.04.03	-	-
16	921215-1-*****	서용철	2024.07.12	2024.07.12	2024.07.12	2024.07.12
17	950317-6-*****	유필재에비전	2018.07.23	2018.07.23	2018.07.23	2018.07.23

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는 것이며, 발급사실 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4대 사회보험 보험사(www.hanjinlife.co.kr)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연금 1577-1000, 건강보험 1577-1000, 산재고용보험 1588-0073

■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발급번호: 2025082063352 출력일시: 2025.08.20 17:02 2 / 2

연번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자 격 특 록 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항 여 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는 (국민연금)으로 신청·발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의 업무목적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재직중영용, 경력중영용, 대졸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발급 기관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학 기간 제출을 위한 용도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단 지사 영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 받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의처: 국민연금 1577-1000, 건강보험 1577-1000, 산재고용보험 1588-0073)
 -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가입내역은 해당 보험별 각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자격특정일'은 근로자 고용일을 뜻하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재직신고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특정일(고용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 관제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
국민연금 미 사	국민연금 미 사	국민건강보험 확인	국민건강보험 확인

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는 것이며, 발급사실 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4대 사회보험 보험사(www.hanjinlife.co.kr)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연금 1577-1000, 건강보험 1577-1000, 산재고용보험 1588-0073

S 1-03

취업규칙



주식회사 에스비엘
개정신고 (2019년 8월)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한 바 관계 법규상 위반내용이 없고 이 규칙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칙 준수에 따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2019년 월 일

연번	직책/직종	성명	서명(날인)	연번	직책/직종	성명	서명(날인)
1		이국희		21			
2		박상환		22			
3		박승민		23			
4		서준희		24			
5		조성우		25			
6		최정		26			
7		이바인		27			
8		김현우		28			
9		조영서		29			
10		김연희		30			
11		송복진		31			
12		배승현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주)에스비엘 대표이사 귀하

- 48 -

공통	근로자1 (근로조건)								
S 1-04	근로계약서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합의하에 작성/서명하고 이를 각각 1통씩 보유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외국인근로자가 있을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	401		A1.2	1.2, 8.7			S-2-2
	국내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9조~제22조,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점검사항	점검	☐ 근로계약서 확인 (임금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근무 유형, 강제 근로 금지 등에 관한 사항 확인) - (외국인근로자가 있을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확인 ☐ 근로계약서 배부 확인(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는지 여부 확인)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근로자 인터뷰)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으로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음 근로자가 직접 서면으로 자필 서명한 뒤 원본을 근로자와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고 있음 근로 계약서에 근무지, 근로 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음								
2차 실사	근로 계약 체결 시 표준 근로 계약서를 근거로 근로 조건, 임금 형태, 휴가, 퇴직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있음 근로자가 직접 서면으로 자필 서명한 뒤 원본을 근로자와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고 있음 (연봉 계약서 확인) 근로자 명부 및 근로 계약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을 안내함								
개선 Comment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근무 장소와 근무 유형 등의 사항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8조 참고)을 명시해야 함 사업 주는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 조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준 뒤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근로 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근로자가 직접 서면으로 자필 서명한 뒤 원본을 근로자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법으로 정한 표준 근로 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를 사용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현지 언어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안내함								

근로자1 (근로조건) > 공통 > S 1-05

공통	근로자1 (근로조건)								
S 1-05	임금명세서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명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2024년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 - 급여 주기(ex 한 달)동안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확한 보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총 근로시간, 구체적 공제내역 등의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4	2-20, 2-21	S1-10, S1-16	A4.2		제95호		S-2-5
	국내법	최저임금법 제6조, 제11조, 근로기준법 제39조, 제45조,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							
점검사항	점검	☐ 최저임금 준수 및 주지의무 확인			☐ 적법하게 산정된 임금에 관한 임금명세서(최근 3개월) 보유 확인				
		☐ 임금명세서를 전자 또는 서면으로 근로자가 확인하였는지 점검			- 총 근로시간과 공제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지 점				
	보조	☐ 보상 지표 (성별·직급·직군별 임금 격차, 중위 보수액 대비 최고 보수액 비율)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임금 명세서는 기본 급, 공제 금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급여 명세서는 이메일로 매월 지급 일에 제공하고 있음 적법 하게 산정된 임금에 관한 임금 명세서 보유 하고 있으며, 연장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								
2차 실사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 명세서를 제공 하고 있음 적법하게 산정 된 임금에 관한 임금 명세서 보유 확인 (25.7월 급여 명세서 확인)								
개선 Comment	사업 주 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 액, 성명, 주민 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근로일 수 및 근로 시간 등의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해야 함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 중 4대 사회 보험료 및 소득세와 주민 세 등의 세금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함 사용자는 임금 대장 및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함을 안내함								

S 1-05

임금 명세서

7월 급여명세서		
성명	귀하	
기 본 급	기 본 급	00,000원
	차 량 및 식 대	
		원
지급액 합계		00,000원
공 제 금 내 역	소 득 세	3,740원
	주 민 세	370원
	국 민 연 금	500원
	건 강 보 험	610원
	장 기 요 양 보 험	570원
	고 용 보 험	300원
공제금 합계		7,090원
차인지급액		9,910원

410-88-54240
(주)에스비엘 박인자
한국인사관리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5길 15
에스비엘 빌딩 5층



근로자1 (근로조건) > 공통 > S 1-06

공통	근로자1 (근로조건)																																																						
S 1-06	근로수당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수당을 법규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table><tr><td>지표설명</td><td colspan="8">- 정규 근로시간 외 근로(연장 근로)나 기타 보상에 대한 임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td></tr><tr><td>글로벌지표</td><td>ISO 26000</td><td>GRI</td><td>ESRS</td><td>RBA</td><td>SMETA</td><td>ILO</td><td>K-ESG</td><td>공급망K-ESG</td></tr><tr><td></td><td>6.4.4</td><td>2-20, 2-21</td><td>S1-10, S1-16</td><td>A4.1</td><td>5.1, 6.3</td><td>제26호, 제131호</td><td></td><td>S-2-4, S-2-5</td></tr><tr><td>국내법</td><td colspan="8">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의2, 제56조, 최저임금법 제6조</td></tr><tr><td rowspan="2">점검사항</td><td>점검</td><td colspan="5">☐ 임금 명세서(최근 3개월) ☐ 근로계약서(임금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 최저임금) 확인 ☐ 취업규칙 내 근로시간 확인</td></tr><tr><td>보조</td><td colspan="5">☐ 근로시간 측정 시스템 보유 및 활용 여부 확인 ☐ 초과 근로 동의서, 근로시간 측정 결과(근태관리)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및 유형) 및 처우 확인</td></tr></table>						지표설명	- 정규 근로시간 외 근로(연장 근로)나 기타 보상에 대한 임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4	2-20, 2-21	S1-10, S1-16	A4.1	5.1, 6.3	제26호, 제131호		S-2-4, S-2-5	국내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의2, 제56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점검사항	점검	☐ 임금 명세서(최근 3개월) ☐ 근로계약서(임금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 최저임금) 확인 ☐ 취업규칙 내 근로시간 확인					보조	☐ 근로시간 측정 시스템 보유 및 활용 여부 확인 ☐ 초과 근로 동의서, 근로시간 측정 결과(근태관리)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및 유형) 및 처우 확인				
	지표설명	- 정규 근로시간 외 근로(연장 근로)나 기타 보상에 대한 임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4	2-20, 2-21	S1-10, S1-16	A4.1	5.1, 6.3	제26호, 제131호		S-2-4, S-2-5																																														
	국내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의2, 제56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점검사항	점검	☐ 임금 명세서(최근 3개월) ☐ 근로계약서(임금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 최저임금) 확인 ☐ 취업규칙 내 근로시간 확인																																																					
	보조	☐ 근로시간 측정 시스템 보유 및 활용 여부 확인 ☐ 초과 근로 동의서, 근로시간 측정 결과(근태관리)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및 유형) 및 처우 확인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지문 인식 출퇴근 시스템을 통해 근로 시간 측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퇴근 관리에 운영하고 있음 근로 계약서(임금 계산, 근로 시간에 대한 명시, 최저임금) 확인, 최저임금 이상 액을 지급하고 있음 정규 근로 시간 외 근로(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은 기준은 근로 계약서에 명확히 정립 되어 있음																																																						
2차 실사	근로 계약서 (임금 계산, 근로 시간에 대한 명시, 최저임금) 확인 , 최저임금 이상 액을 지급 확인 취업 칙 제 4장 47조~52조 규정에 의 거 임금을 지급 하고 있음																																																						
개선 Comment	정규 근로 시간 외 근로(연장 근로, 휴일 근무, 야간 근로)나 기타 보상에 대한 임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법정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합의가 있을 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함 사업 주 는 임금 대장 및 임금의 결정 ·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근로자1 (근로조건) > 공통 > S 1-07

공통	근로자1 (근로조건)											
S 1-07	해고 및 퇴직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근로자의 해고 및 퇴직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근로자의 해고는 정해진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며, 해고의 예고, 제한, 통지 등 법적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은 정해진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하며,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6.4.3.2	201-3		A4.3, AM.2.2		제158호	S-2-3			
	국내법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제4조, 제8조~제11조,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의2, 제24조, 제32조, 시행령 제31조									
점검사항	점검		☐ 취업규칙 확인(퇴직 및 해고 조항) ☐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확인									
			☐ (해당 시) 퇴직연금 규약 ☐ 확인퇴직 및 해고 서류 확 ○ 니(인사 담당자 인터뷰)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해고 사유, 퇴직의 종류 (당연 퇴직, 의원 퇴직, 정년 퇴직)등을 규정 하고 있음 퇴직 급여는 취업 규칙 제 4절 퇴직금 및 기타 항목에 명 기 되어 있음 당연 퇴직, 퇴직 절차, 해고 예고 등에 대해 취업 규칙 제 77조~82조에 규정 되어 있음											
2차 실사	취업 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절차를 준수 하고 있음 취업 규칙 제 81조(해고 사유) 조항에 따라 사원의 해고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개선 Comment	사업 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할 수 없음 사업 주는 경영 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건박한 경영 상의 사유가 있어야 함. 이때 사업 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사용 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 퇴직 연금 제도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함											

S 1-07

해고 및 퇴직

제 4편 퇴직금 및 기타

제 69 조 (퇴직금 지급)

① 1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면, 계속근속 1년에 대하여 퇴직 직전의 최종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년 이상 근무하는 임원 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은 감지별급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법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9 -

제 70 조 (사망시 수당)

사망으로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은 병정상환인에게 지급한다.

제 71 조 (퇴직금 산정)

①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속 수에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 72 조 (근속기간 계산방법)

① 계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원하여 저기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② 일용직 사원은 5일 이상 계속근무가 단절될 경우 단절되는 5일째를 계속근로로 본 자가 종료된 날로 한다.

제 73 조 (당금청산)

퇴직과 동시에 당금청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여 회사의 사정이 있을 경우 예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4 조 (비상시 지급)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기항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본인 또는 그 수일에 의하여 경제를 유지하는 자가 본인, 출산, 사망, 부상, 질병에 걸렸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 ② 회사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1주일 이상 외향하게 되는 경우
- ③ 기타 회사에서 인정할 때

- ④ 회사는 강제지속 또는 계속금의 권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단 사원의 위약으로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 75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 4 장 퇴직과 해고

제 77 조 (신분보장)

사원은 이 규칙 및 기타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니하고는 그 회사에 의하여 면제 당하지 아니한다.

제 78 조 (당면퇴직)

사원이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 ① 본인이 퇴직권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
- ②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 ③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 ④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사원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 ⑤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월 이내에 복직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⑥ 업무상 재해의 치료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의사소견으로 판정된 자
- ⑦ 인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3개월 이내에 복직 명령을 받지 못한 자
- ⑧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 1년 관경을 받은 때
- ⑨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질병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⑩ 일용직 사원인 자가 계속 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단절되는 5일째를 당면 퇴직일자로 본다.
- ⑪ 해고 또는 위 각 항의 내용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⑫ 제9조의 각 항에 해당함이 발한 자

제 79 조 (퇴직 절차)

- ①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권을 제출하고 회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원은 전항의 퇴직 승인이 있기까지는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 ③ 퇴직 시점은 최종 견제자가 결재한 일자로부터 기준으로 하고 사직권에 결재일자를 기록한다.
- ④ 회사는 제출된 사직권을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제 80 조 (정년)

- 21 -

S 1-08

근로자 복지

제 105 조 (교육시간)

전조의 교육소요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106 조 (교육규정)

교육에 관한 필요한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7 조 (수강자의 의무)

사원이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 108 조 (후생복지)

사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109 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사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② 회사는 채용, 교육, 승진, 평가,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모성보호 등 여사원에 대한 보호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110 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보호와 징계)

- ① 회사는 직장내에서 근로조건을 이유로 하거나 기타 고용상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폭력을 행하는 자는 지위, 직급을 박탈하고 징계한다.
- ② 회사는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③ 성희롱사건 발생시 회사는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고 인적사항, 피해내용, 조사내용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고접수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사건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준은 사건정도를 상,중,하로 분류하여 같은 징계 또는 경고, 중은 감봉, 하는 경고 또는 전격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 29 -

제 111 조 (임신부의 보호)

- ① 임신 중의 여사원에 대하여는 출산전 ·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부여한다.
- ② 임신 중인 여성의 사원이 임신 이후 휴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중절수술은 제외한다.
- ③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 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 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절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산전 · 후 휴가 급여액이 그 사원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최소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 ⑤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와 근무로 전환시킨다.

제 112 조 (휴산 · 사산휴가보호제)

회사는 임신중의 여사원이 임신 이후 휴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본계법규에 따라 최대 90일에서 5일까지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제 113 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제한)

- ①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 ② 임신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의 명시적인 동치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 근무는 1일 2시간, 1주일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제 114 조 (육아휴직)

-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임상자녀 포함)
-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사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정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한다.
- ④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총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

- 30 -

근로자1 (근로조건) > 공통 > S 1-09

공통	근로자1 (근로조건)									
S 1-09	법정 의무교육									
지표 내용 (평가 기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법정 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급여제도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있을 경우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404	S1-13	AM.2.2	3.2	제140호		
	국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							
	점검사항		점검 ☐ 법정 의무 교육 실시 확인(교육에 대한 자료 및 참석 여부 확인, 근로자 인터뷰) - (외국인근로자가 있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및 자료 확인(외국인근로자가 언어 문제로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 교육을 받지 못한 임직원에 대한 후속 조치 보조 ☐ 위탁교육 시 교육기관 지정서 ☐ 성과 및 경력 개발 검토, 교육훈련에 참여한 직원의 비율 ☐ 1인당 평균 교육시간							
자가진단	아니오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법정 의무 교육(장애인 인식 교육, 개인정보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 보건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실시 확인 (법정의무교육관리센터, 대한 안전교육협회) 고용 고용노동부 정식 훈련 교육 기관 인지 확인 결과 고용 노동부 정식 훈련인증기관임을 확인 함 고용노동부 정식 훈련 기관 교육 및 수료증 확인									
2차 실사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 하고 있음을 확인 함(성희롱 교육 2.7,직장내 괴롭힘 교육 1.14, 안전 보건 교육 8.25) 의무 교육 일정을 연간 계획에 의 거 실시 하고 실적을 관리 함을 확인									
개선 Comment	직원들의 직무 교육 외에 법정 의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법정 의무 교육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퇴직 연금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등이 있음 교육은 사업 주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업 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 이때 사업 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함.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임직원에게는 후속 조치로 추가 교육 및 온라인 강의를 실시해야 함									

S 1-09

법정의무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주 소 지 관: 주성회사 에스비영
 교 육 지 관: 법정의무교육관리센터
 사 업 자 번 호: 410-86-54340
 주 소: 광주광역시 광안구 팔룡안단3번로 91 (충동)
 주 소 자 명: 교육행정명세참조
 장 사 명: 임태혁 장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구분	이수과목	이수시간
1회	직장 내 괴롭힘 정의지 정리	10분
1-1회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분
1-2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절차,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내용	15분
1-3회	괴롭힘으로 인한 조치의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10분
1-4회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15분

2025년 1월 14일

법정의무교육관리센터

개인정보보호교육

주 소 지 관: 주성회사 에스비영
 교 육 지 관: 법정의무교육관리센터
 사 업 자 번 호: 410-86-54340
 주 소: 광주광역시 광안구 팔룡안단3번로 91 (충동)
 주 소 자 명: 교육행정명세참조
 장 사 명: 임태혁 장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구분	이수과목	이수시간
1회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의 정리	10분
2회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예방 및 사고처리 그외고 피해	20분
3회	개인정보 보호 사고의 사례 와 원인	15분
4회	개인정보 유출시 조치방법 및 관련규정	15분

2025년 2월 3일

법정의무교육관리센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주 소 지 관: 주성회사 에스비영
 교 육 지 관: 법정의무교육관리센터
 사 업 자 번 호: 410-86-54340
 주 소: 광주광역시 광안구 팔룡안단3번로 91 (충동)
 주 소 자 명: 교육행정명세참조
 장 사 명: 임태혁 장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구분	이수과목	이수시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5분
1-1회	성희롱의 개념 및 실태조사	5분
1-2회	성희롱의 유형	10분
1-3회	사실확인 의무	5분
1-4회	성희롱의 대처요령	15분
1-5회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10분
1-6회	사예로 든 성희롱	10분

2025년 2월 7일

법정의무교육관리센터

수 료 증

소 속: (주)에스비영
 성 명: 김원침
 생년월일: 1978-08-11
 수료일자: 2025-01-23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2025년 관리감독자 제2종 A (비대면 화상교육, 4시
 간)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대한안전교육협회장

S 1-11

모성보호

제 105 조 (교육시간)

전조의 교육소요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106 조 (교육규정)

교육에 관한 필요한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7 조 (수강자의 의무)

사원이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 108 조 (후생복지)

사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109 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사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② 회사는 채용, 교육, 승진, 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모성보호 등 여성원에 대한 보호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110 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보호와 징계)

- ① 회사는 직장내에서 근로조건을 이유로 하거나 기타 고용상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폭력을 행하는 자는 지체, 자금을 막론하고 징계한다.
- ② 회사는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③ 성희롱사건 발생시 회사는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고 인적사항, 피해내용, 조사내용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고질수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사건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준은 사건경도를 상,중,하로 분류하여 상은 정직 또는 해고, 중은 감봉, 하는 경고 또는 권고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 28 -

제 111 조 (임신부의 보호)

- ① 임신 중의 여자사원에 대하여는 출산전 ·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의경우 60일) 이상 부여한다.
- ② 임신 중인 여성의 사원이 임신 이후 휴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중립수술은 제외한다.
- ③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 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 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 서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산전 · 후 휴가 급여액이 그 사원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최소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 ⑤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우선 중립회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 112 조 (휴산 · 사산휴가보호)

회사는 임신중의 여사원이 임신 이후 휴산 또는 사산한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90일에서 5일까지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제 113 조 (연장 · 야간 휴일근로와 제한)

- ①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② 임신부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 근로는 1일 2시간, 1주일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제 114 조 (육아휴직)

-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임상자녀 포함)
-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사임을 제할 수 없는 경우나 정제를 제외하고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한다.
- ④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

- 30 -

근로자1 (근로조건) > 업종별 > S 1-12

업종별	근로자1 (근로조건)									
S 1-12	사내파견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사내 파견, 하도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사업장 내 협력사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또는 노무제공자 등이 있을 경우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사항(해당 직업 여부, 계약 관계 등)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소속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3.7	GRI 2-8, 401-2, 406	ESRS S1-7	RBA	SMETA 8.2	ILO 제19호, 제118호	K-ESG S-2-2	공급망K-ESG	
	국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3장, 시행령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점검사항	☐ 파견 금지 작업 해당 여부 ☐ 타 회사 직원의 안전보호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 참여 여부 ☐ (해당 시) 노무제공자 계약서 확인					☐ 파견 계약서 확인 ☐ 사용자업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보조	☐ 근로자파견사업장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허가 유효기간: 3년)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사업장 내 사내 파견 및 하도급 근로자 없으며, 관련 관리 대상이 없음 외부 도급, 파견 형태의 근로 제공이 없음									
2차 실사	원 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하도급 계약 및 파견 근로 형태가 없음									
개선 Comment	사내 하도급은 도급 사업주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다른 사업 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도급 및 수급 사업 주는 사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함									

근로자1 (근로조건) > 업종별 > S 1-13

업종별	근로자1 (근로조건)																																																									
S 1-13	미성년 근로자																																																									
지표 내용 (평가 기준)	미성년 근로자(실습생 포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table><tr><td>지표설명</td><td colspan="7">- 미성년 근로자(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연령(15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 외 근로 포함), 안전과 보건 등에서 법에서 정한 별도의 보호 조치(야간근로 금지, 위험작업 금지 등)를 받아야 합니다.</td></tr><tr><td>글로벌지표</td><td>ISO 26000</td><td>GRI</td><td>ESRS</td><td>RBA</td><td>SMETA</td><td>ILO</td><td>K-ESG</td><td>공급망K-ESG</td></tr><tr><td></td><td>6.4.6</td><td>408</td><td></td><td>A2.2</td><td>4.1.4.4</td><td>제138호</td><td></td><td>S-2-3</td></tr><tr><td>국내법</td><td colspan="7">근로기준법 제42조, 제64조~제67조, 제69조~제70조, 제72조, 제77조, 시행령 제22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제25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및 제9조의2</td></tr><tr><td>점검사항</td><td>점검</td><td colspan="6"> ☐ 아동 및 미성년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 프로세스설명 및 얼굴 확인, 보호자 동의서, 취직인허증 보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 미성년 근로자에 관한 명시된 위험작업 기준 및 보호 방법 확인 ☐ 미성년 근로자(학습근로자 포함)의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 확인 (근로자 인터뷰) ☐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서류(근로 시간표 기록 확인) ☐ (학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일학습병행 과정의 운영에 대한 서류 확인 ☐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계약서 및 근로시간 확인 </td></tr><tr><td></td><td>보조</td><td colspan="6">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 등) ☐ 연소자의 근로 조치에 대한 점검 사항(기록 확인) </td></tr></table>								지표설명	- 미성년 근로자(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연령(15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 외 근로 포함), 안전과 보건 등에서 법에서 정한 별도의 보호 조치(야간근로 금지, 위험작업 금지 등)를 받아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6	408		A2.2	4.1.4.4	제138호		S-2-3	국내법	근로기준법 제42조, 제64조~제67조, 제69조~제70조, 제72조, 제77조, 시행령 제22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제25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및 제9조의2							점검사항	점검	☐ 아동 및 미성년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 프로세스설명 및 얼굴 확인, 보호자 동의서, 취직인허증 보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 미성년 근로자에 관한 명시된 위험작업 기준 및 보호 방법 확인 ☐ 미성년 근로자(학습근로자 포함)의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 확인 (근로자 인터뷰) ☐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서류(근로 시간표 기록 확인) ☐ (학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일학습병행 과정의 운영에 대한 서류 확인 ☐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계약서 및 근로시간 확인							보조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 등) ☐ 연소자의 근로 조치에 대한 점검 사항(기록 확인)					
	지표설명	- 미성년 근로자(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연령(15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 외 근로 포함), 안전과 보건 등에서 법에서 정한 별도의 보호 조치(야간근로 금지, 위험작업 금지 등)를 받아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6	408		A2.2	4.1.4.4	제138호		S-2-3																																																	
	국내법	근로기준법 제42조, 제64조~제67조, 제69조~제70조, 제72조, 제77조, 시행령 제22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제25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및 제9조의2																																																								
점검사항	점검	☐ 아동 및 미성년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 프로세스설명 및 얼굴 확인, 보호자 동의서, 취직인허증 보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 미성년 근로자에 관한 명시된 위험작업 기준 및 보호 방법 확인 ☐ 미성년 근로자(학습근로자 포함)의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 확인 (근로자 인터뷰) ☐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서류(근로 시간표 기록 확인) ☐ (학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일학습병행 과정의 운영에 대한 서류 확인 ☐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계약서 및 근로시간 확인																																																								
	보조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 등) ☐ 연소자의 근로 조치에 대한 점검 사항(기록 확인)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미성년 근로자(실습생 포함) 해당 없음 학습 근로자 해당 없음 향후에도 미성년 근로자, 학습 근로자 채용 계획 없음																																																									
2차 실사	미성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채용 계획 없음																																																									
개선 Comment	일반적으로 최저 연령(15세)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되며 최저 근로 연령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사 지원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사업 주는 미성년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 해야 함 사업 주는 일 학습 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 근로 자가 계약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 학습 병행에 적합한 교육을 개발하고 학습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함																																																									

근로자1 (근로조건) > 공통 > S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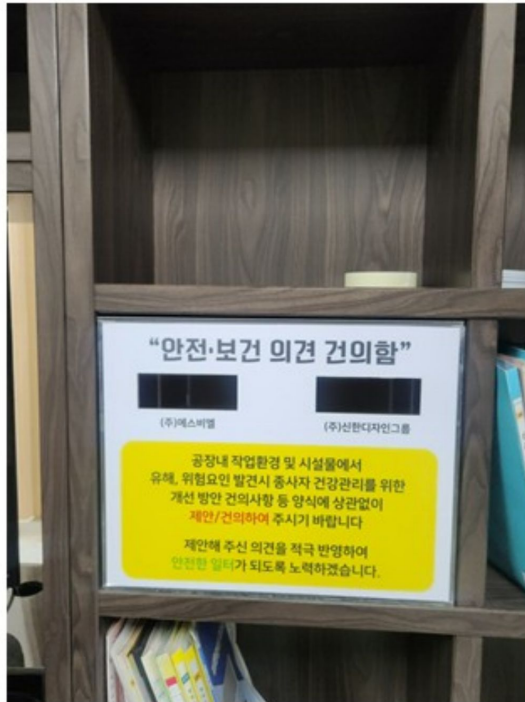
공통	근로자1 (근로조건)									
S 1-14	노사협의회									
지표 내용 (평가 기준)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노동조합(근로자 대표 단체) 또는 노사협의회와 정기적인 소통(노동법상 분기당 1회 이상 노사협의회 개최)을 해야 하며, 노사 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행하고 이를 관리(정기적 소통, 이행결과에 대한 문서나 사진 보관)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5	2-30, 402, 407	S1-2, S1-8	A7.2	2.2	제98호	S-2-6	S-1-2, S-1-3
	국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0조~제14조, 제29조~제36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제25조							
	점검사항	점검	☐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신고 접수증 ☐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전파 방법 확인 ☐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이행여부 확인(근로자 인터뷰) ☐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조 결성, 노조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 및 절차 보유 확인, 근로자 대표와의 교섭 결과 확인(단체협약서 및 노동조합 회의록 내용 확인)							
보조			☐ 취업규칙 확인(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보장)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노동조합은 구성되어 있지 않음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사 협의회 설치 해당 없음 향후 조직 규모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사 협의회 운영 규정(지침) 제정 운영 권고									
2차 실사	점검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 없음									
개선 Comment	노사 협의회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설치 의무가 있음. 노사 협의회는 동 수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노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직 규모에 따라 3~5명으로 구성함 노사 협의회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 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 인사 노무 관리 제도 개선 등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자1 (근로조건) > 공통 > S 1-15

공통	근로자1 (근로조건)									
S 1-15	고충처리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근로자들의 고충처리 및 수렴을 위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고충/불만 사항의 접수, 조사, 처리 절차를 갖춘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3인 이내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해야 하며, 모든 징계 조치는 절차에 따라 진행/기록되며 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3.6	2-23, 406	S1-3, S1-17	AM3.1, AM3.2	9.2		S-5-1	S-2-6
	국내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제26조~제28조) 및 시행령 제7조~제9조							
	점검사항		점검	☐ 고충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서(매뉴얼) 확인 ☐ 고충처리위원 활동에 대한 기록 확인(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보조	☐ 고충처리위원 선임에 대한 기록 확인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고충 처리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서(매뉴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정기적인 회의체를 통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하나 관리 근거가 없음 제도를 정비하고 규정 화 하여 행동의 결과물들을 문서로 기록 보관할 것을 권장함									
2차 실사	고충처리 절차서를 만들어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 직원에게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공유 필요 고충처리 접수 및 대장을 만들어 고충 내용, 처리 결과를 피드백 하는 등 체계 구축 필요 고충처리 위원들의 정기적인 회의체를 통하여 직원의 주요 애로 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 활동이 필요함									
개선 Comment	사업장은 고충/불만 사항의 접수, 조사, 처리 절차를 갖춘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함 직원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상시 접수하고 처리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도 도움 됨을 안내함									

S 1-15

고충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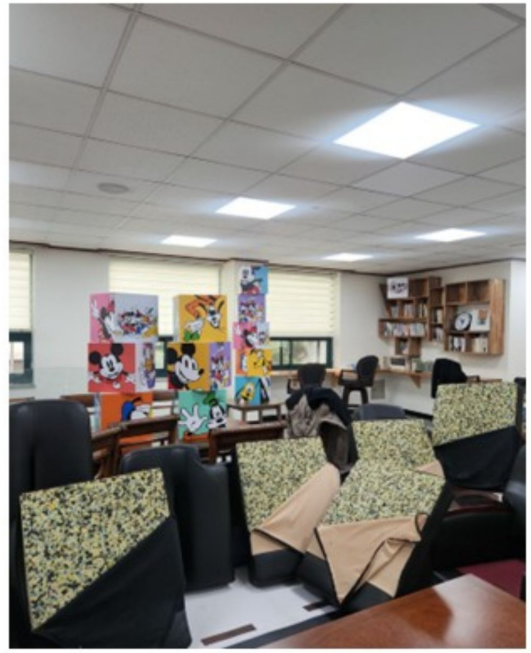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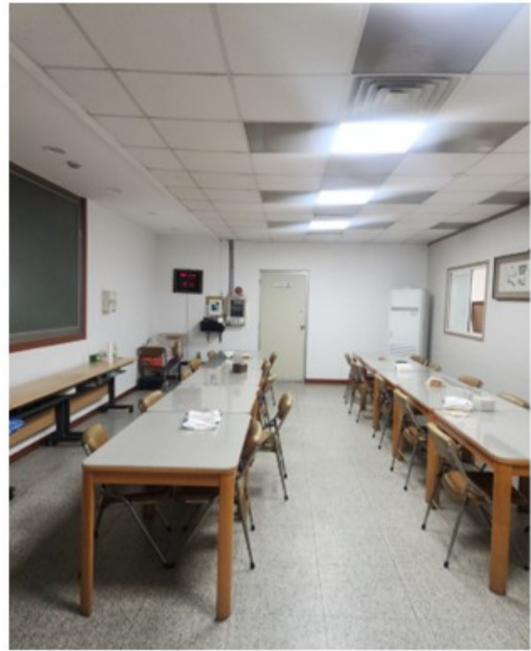


근로자1 (근로조건) > 공통 > S 1-16

공통	근로자1 (근로조건)									
S 1-16	편의시설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근로자의 편의시설(음용수, 화장실 및 휴게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사업주는 근로자의 편의시설(음용수, 화장실 및 휴게시설)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 능률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4.1			B7.2		제152호		
	국내법		먹는물 관리법 제2조, 제8조의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제567조							
	점검사항	점검	☐ 식수 설치 장소 및 식수 검사 보고서 확인 (설치 신고증) ☐ 적절한 수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방안							
보조		☐ (휴게시설이 있을 경우) 위치, 규모, 환경 확인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사무실에 생수기 설치 되어 있고 휴게실 냉장고에 생수(병)를 구비하고 있음 공장 현장에 휴게 를 위한 휴게실이 있으며, 생수기, 냉장고, 탁자 등이 갖춰져 있음 사무실 내 휴게 시설이 있으며 가구 및 냉장고, 커피 및 음료가 준비 되어 있음									
2차 실사	공장과 사무실 모두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 화장실은 청결 하게 잘 유지 되고 있으며 , 휴게 시설은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 하고 있음									
개선 Comment	정수기 및 냉온수 설치 관리자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 등의 장소에는 설치해서는 안됨 공중 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함 사업주는 휴게 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함									

S 1-16

편의시설



근로자1 (근로조건) > 업종별 > S 1-17

업종별	근로자1 (근로조건)																																																																
S 1-17	구내식당, 기숙사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근로자에게 식당(구내 식당 및 협약된 식당 포함)과 숙소(기숙사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룸 등 포함)를 제공할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table><tr><td rowspan="2">지표설명</td><td colspan="7">- 사내 식당집단 급식소)은 필요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위생적으로 관리일일 식당 위생 점검, 식수 검사 등을 해야 합니다. 인허가 항목: 집단 급식소 운영 인허가 / 조리사, 영양사 등 식당 근무 종업원 전문 자격 취득 등) - 기숙사는 법에서 규정된 구조와 설비, 주거 환경 요건 등을 충족하고 위생적으로 관리정결)해야 하며관련 규정과 규칙을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행동요령이 구비되어 근로자들이 숙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 제공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비용징수를 해야 합니다.</td></tr><tr><td>글로벌지표</td><td>ISO 26000</td><td>GRI</td><td>ESRS</td><td>RBA</td><td>SMETA</td><td>ILO</td><td>K-ESG</td><td>공급망K-ESG</td></tr><tr><td></td><td>6.4.4.1</td><td></td><td></td><td>B7.1, B7.2</td><td>3.3, 3.4</td><td>제161호</td><td></td><td></td></tr><tr><td>국내법</td><td colspan="7">식품위생법 제36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0장 및 시행령 제54조~제58조의2</td></tr><tr><td rowspan="2">점검사항</td><td colspan="7"><table><tr><td rowspan="3">점검</td><td>☐ 집단 급식소 운영 인허가 및 식당 근로자의 전문 자격 취득 여부 확인</td><td>☐ 집단 급식소 및 식당 근로자 위생관리 지침 및 실태 확인</td></tr><tr><td>☐ (집단 급식소 없을 경우) 제류된 식당 관리사항 확인</td><td>☐ 기숙사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td></tr><tr><td>☐ 비상시 대피 행동요령 구비 여부 확인</td><td>☐ 외국인근로자 숙소제공 여부 확인(비용 징수 시 관련 서류 확인)</td></tr></table></td></tr><tr><td>보조</td><td colspan="7">☐ ☐ (기숙사가 없으나, 회사가 숙소를 지원할 경우) 관련 계약서 점검 사항 및 규정 확인</td></tr></table>								지표설명	- 사내 식당집단 급식소)은 필요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위생적으로 관리일일 식당 위생 점검, 식수 검사 등을 해야 합니다. 인허가 항목: 집단 급식소 운영 인허가 / 조리사, 영양사 등 식당 근무 종업원 전문 자격 취득 등) - 기숙사는 법에서 규정된 구조와 설비, 주거 환경 요건 등을 충족하고 위생적으로 관리정결)해야 하며관련 규정과 규칙을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행동요령이 구비되어 근로자들이 숙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 제공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비용징수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4.1			B7.1, B7.2	3.3, 3.4	제161호			국내법	식품위생법 제36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0장 및 시행령 제54조~제58조의2							점검사항	<table><tr><td rowspan="3">점검</td><td>☐ 집단 급식소 운영 인허가 및 식당 근로자의 전문 자격 취득 여부 확인</td><td>☐ 집단 급식소 및 식당 근로자 위생관리 지침 및 실태 확인</td></tr><tr><td>☐ (집단 급식소 없을 경우) 제류된 식당 관리사항 확인</td><td>☐ 기숙사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td></tr><tr><td>☐ 비상시 대피 행동요령 구비 여부 확인</td><td>☐ 외국인근로자 숙소제공 여부 확인(비용 징수 시 관련 서류 확인)</td></tr></table>							점검	☐ 집단 급식소 운영 인허가 및 식당 근로자의 전문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집단 급식소 및 식당 근로자 위생관리 지침 및 실태 확인	☐ (집단 급식소 없을 경우) 제류된 식당 관리사항 확인	☐ 기숙사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비상시 대피 행동요령 구비 여부 확인	☐ 외국인근로자 숙소제공 여부 확인(비용 징수 시 관련 서류 확인)	보조	☐ ☐ (기숙사가 없으나, 회사가 숙소를 지원할 경우) 관련 계약서 점검 사항 및 규정 확인						
	지표설명	- 사내 식당집단 급식소)은 필요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위생적으로 관리일일 식당 위생 점검, 식수 검사 등을 해야 합니다. 인허가 항목: 집단 급식소 운영 인허가 / 조리사, 영양사 등 식당 근무 종업원 전문 자격 취득 등) - 기숙사는 법에서 규정된 구조와 설비, 주거 환경 요건 등을 충족하고 위생적으로 관리정결)해야 하며관련 규정과 규칙을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행동요령이 구비되어 근로자들이 숙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 제공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비용징수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4.1			B7.1, B7.2	3.3, 3.4	제161호																																																										
	국내법	식품위생법 제36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0장 및 시행령 제54조~제58조의2																																																															
점검사항	<table><tr><td rowspan="3">점검</td><td>☐ 집단 급식소 운영 인허가 및 식당 근로자의 전문 자격 취득 여부 확인</td><td>☐ 집단 급식소 및 식당 근로자 위생관리 지침 및 실태 확인</td></tr><tr><td>☐ (집단 급식소 없을 경우) 제류된 식당 관리사항 확인</td><td>☐ 기숙사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td></tr><tr><td>☐ 비상시 대피 행동요령 구비 여부 확인</td><td>☐ 외국인근로자 숙소제공 여부 확인(비용 징수 시 관련 서류 확인)</td></tr></table>							점검	☐ 집단 급식소 운영 인허가 및 식당 근로자의 전문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집단 급식소 및 식당 근로자 위생관리 지침 및 실태 확인	☐ (집단 급식소 없을 경우) 제류된 식당 관리사항 확인	☐ 기숙사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비상시 대피 행동요령 구비 여부 확인	☐ 외국인근로자 숙소제공 여부 확인(비용 징수 시 관련 서류 확인)																																																			
	점검	☐ 집단 급식소 운영 인허가 및 식당 근로자의 전문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집단 급식소 및 식당 근로자 위생관리 지침 및 실태 확인																																																														
☐ (집단 급식소 없을 경우) 제류된 식당 관리사항 확인		☐ 기숙사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비상시 대피 행동요령 구비 여부 확인		☐ 외국인근로자 숙소제공 여부 확인(비용 징수 시 관련 서류 확인)																																																															
보조	☐ ☐ (기숙사가 없으나, 회사가 숙소를 지원할 경우) 관련 계약서 점검 사항 및 규정 확인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사내 식당 없음, 기숙사(외부/원룸) 해당 없음																																																																
2차 실사	점검 사항 관련 하여 해당 사항 없음																																																																
개선 Comment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유지· 관리하고, 정기적인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함 사업 주는 원칙적으로 숙식 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가 가능 함 이때 근로 계약서에 근로자 부담 액, 숙식 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자1 (근로조건) > 업종별 > S 1-18

업종별

근로자1 (근로조건)

S 1-18

기간제/단시간 근로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기간제, 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ILO	K-ESG	공급망K-ESG
	6.4.3		S1-6		8.2, 8A.2	제175호, 제177호	S-2-2	
국내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제16조							
점검사항	점검	☐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수 확인 ☐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처우 확인(인터뷰) ☐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관련 규정 및 제도 확인(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기간제, 단기간제 근로자 확인 결과 근무 실적 없으며 향후 활용 계획 없음

2차 실사

기간 제, 단 기간 제 근로자 확인 결과 근무 실적 없으며 향후 활용 계획 없음

개선
Comment

기간 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 시간 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함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 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 급 임금을 일급 통상 임금으로 산정시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간급 임금으로 산정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을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하는 것을 말함

근로자2 (작업환경) > 업종별 > S 2-20

업종별	근로자2 (작업환경)									
S 2-20	안전보건계획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안전보건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을 작성 및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시설·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 및 규정 등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4.6	403	S1-1	BM2-2	3	S-4-1	S-4-3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25조, 제42조, 제44조, 제6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점검사항	점검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계획 작성 및 이사회 보고·승인 사항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해당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항 ☐ (해당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항 ☐ (건설업) 안전관리계획,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 사항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회사는 안전보건 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개정된 법규에 따라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 가능한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사내활동과 연계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2차 실사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실행,유지, 개선을 위한 실천의지를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에 표명함 회사는 안전 보건 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정된 법규에 따라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 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음									
개선 Comment	안전보건 계획부터 실시기록 및 관리사항은 경영자에게 반드시 보고되어야 함 안전보건 계획 작성의무대상: 500인 이상,안전보건관리규정: 소프트웨어 개발,정보서비스업 등:300명,기타100명 이상)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기 계약용량 300KW이상,안전보건대장: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2023年1-6月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表					
項目	項目名稱	投資金額 (億元)	投資金額 (億美元)	投資金額 (億元)	投資金額 (億美元)
一、對外直接投資總額	對外直接投資總額	15,000	2,343.75	15,000	2,343.75
	其中：非金融業	10,000	1,562.50	10,000	1,562.50
	金融業	5,000	781.25	5,000	781.25
	其中：非金融業	3,000	468.75	3,000	468.75
	金融業	2,000	312.50	2,000	312.50
	其中：非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其中：非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其中：非金融業	200	31.25	200	31.25
金融業	300	46.875	300	46.875	
二、對外直接投資總額	對外直接投資總額	15,000	2,343.75	15,000	2,343.75
	其中：非金融業	10,000	1,562.50	10,000	1,562.50
	金融業	5,000	781.25	5,000	781.25
	其中：非金融業	3,000	468.75	3,000	468.75
	金融業	2,000	312.50	2,000	312.50
	其中：非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其中：非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其中：非金融業	200	31.25	200	31.25
金融業	300	46.875	300	46.875	
三、對外直接投資總額	對外直接投資總額	15,000	2,343.75	15,000	2,343.75
	其中：非金融業	10,000	1,562.50	10,000	1,562.50
	金融業	5,000	781.25	5,000	781.25
	其中：非金融業	3,000	468.75	3,000	468.75
	金融業	2,000	312.50	2,000	312.50
	其中：非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其中：非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其中：非金融業	200	31.25	200	31.25
金融業	300	46.875	300	46.875	
四、對外直接投資總額	對外直接投資總額	15,000	2,343.75	15,000	2,343.75
	其中：非金融業	10,000	1,562.50	10,000	1,562.50
	金融業	5,000	781.25	5,000	781.25
	其中：非金融業	3,000	468.75	3,000	468.75
	金融業	2,000	312.50	2,000	312.50
	其中：非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其中：非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其中：非金融業	200	31.25	200	31.25
金融業	300	46.875	300	46.875	
五、對外直接投資總額	對外直接投資總額	15,000	2,343.75	15,000	2,343.75
	其中：非金融業	10,000	1,562.50	10,000	1,562.50
	金融業	5,000	781.25	5,000	781.25
	其中：非金融業	3,000	468.75	3,000	468.75
	金融業	2,000	312.50	2,000	312.50
	其中：非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其中：非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其中：非金融業	200	31.25	200	31.25
金融業	300	46.875	300	46.875	
六、對外直接投資總額	對外直接投資總額	15,000	2,343.75	15,000	2,343.75
	其中：非金融業	10,000	1,562.50	10,000	1,562.50
	金融業	5,000	781.25	5,000	781.25
	其中：非金融業	3,000	468.75	3,000	468.75
	金融業	2,000	312.50	2,000	312.50
	其中：非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其中：非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其中：非金融業	200	31.25	200	31.25
金融業	300	46.875	300	46.875	
七、對外直接投資總額	對外直接投資總額	15,000	2,343.75	15,000	2,343.75
	其中：非金融業	10,000	1,562.50	10,000	1,562.50
	金融業	5,000	781.25	5,000	781.25
	其中：非金融業	3,000	468.75	3,000	468.75
	金融業	2,000	312.50	2,000	312.50
	其中：非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其中：非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其中：非金融業	200	31.25	200	31.25
金融業	300	46.875	300	46.875	
八、對外直接投資總額	對外直接投資總額	15,000	2,343.75	15,000	2,343.75
	其中：非金融業	10,000	1,562.50	10,000	1,562.50
	金融業	5,000	781.25	5,000	781.25
	其中：非金融業	3,000	468.75	3,000	468.75
	金融業	2,000	312.50	2,000	312.50
	其中：非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其中：非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其中：非金融業	200	31.25	200	31.25
金融業	300	46.875	300	46.875	
九、對外直接投資總額	對外直接投資總額	15,000	2,343.75	15,000	2,343.75
	其中：非金融業	10,000	1,562.50	10,000	1,562.50
	金融業	5,000	781.25	5,000	781.25
	其中：非金融業	3,000	468.75	3,000	468.75
	金融業	2,000	312.50	2,000	312.50
	其中：非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其中：非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其中：非金融業	200	31.25	200	31.25
金融業	300	46.875	300	46.875	
十、對外直接投資總額	對外直接投資總額	15,000	2,343.75	15,000	2,343.75
	其中：非金融業	10,000	1,562.50	10,000	1,562.50
	金融業	5,000	781.25	5,000	781.25
	其中：非金融業	3,000	468.75	3,000	468.75
	金融業	2,000	312.50	2,000	312.50
	其中：非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金融業	1,000	156.25	1,000	156.25
	其中：非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金融業	500	78.125	500	78.125
	其中：非金融業	200	31.25	200	31.25
金融業	300	46.875	300	46.875	

S 2-21

근로자 참여

SBL 1-2. SHE관리조직도및 상세 직무분장		과 재	담당	검 토	문 재
		김재	김재		박성권

대표이사	[위험성평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및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위한 조치
박선자	
연락처: 010-8665-5577	산재사업장교육, 위험성평가교육, 소방안전점검 및 기록부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매월 정기교육 /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 / 현장순회점검
김두영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연락처: 010-2430-6000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들과 토론하여 잠재적위험요소에 관한 토론하여 조치한다.
관리감독자	매월 정기교육 /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성 및 관리, 유해-위험 요인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조치
김현정	작업환경측정 및 대기환경측정관리 및 대기환경기술인 위촉
연락처: 010-8665-5577	MSDS관리 및 교육, 화학물질 통제조사 및 신고
관리감독자 (현장)	현장책임자로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알리고 조치한다.
김만중	신규근로자 현장교육,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감독
연락처: 010-8030-0205	지게차 정기점검 및 기록부작성, 대기배출시설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보건관리자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검진 대상자 일정관리
안지은	검진 대상여부 조회 및 검사독려
연락처: 010-7689-0104	
소방(선임) 안전관리자	매월 시설점검, 작동기능점검 후 기록부 작성 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대한방재 장용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작성 후 시행
연락처: 010-3135-1489	소방훈련 및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전기(선임) 안전관리자	절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기록부작성
㈜ 태영 김재진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
연락처: 010-3603-9447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취도와 기능을 강도롭 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수리·보수
작업환경측정 (선임)관리	1년2번(상반기/하반기)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
대한산업보건협회	측수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화학물질(공정별 화학물질) 공정별 작업환경측정, 분진, 소음 등을 측정
연락처: 062-956-9012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대기환경측정 (선임)관리	1년2번(상반기/하반기) 도장시설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반자동식 측정 및 측정
그린환경종합센터	시료채취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측정분석(현지, 원화수소)하여 대기시료채취를 기록한다.
연락처: 010-4113-4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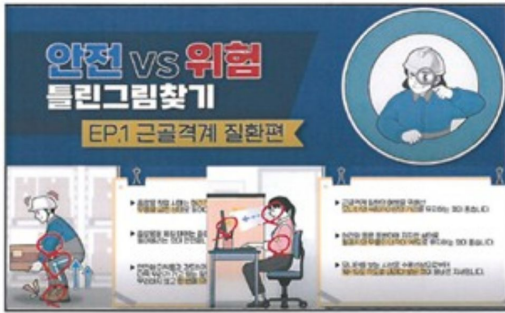
공통	근로자2 (작업환경)																																		
S 2-22	근로자 참여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안전보건에 관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table><tr><td>지표설명</td><td colspan="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노사협의체가 구성되어 법규에 따라 주기별로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의 형태로 근로하는 종사자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td></tr><tr><td>글로벌지표</td><td>ISO 26000 6.4.6.2</td><td>GRI 403-4</td><td>ESRS</td><td>RBA BM3.1</td><td>SMETA 3.5</td><td>K-ESG S-4-1</td><td>공급망K-ESG S-6-5</td></tr><tr><td>국내법</td><td colspan="6">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8조, 제64조~제66조, 제75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td></tr><tr><td>점검사항</td><td>점검</td><td colspan="5">☐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점검 (반기 1회 이상) ☐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및 활동 내용) ☐ (도급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및 활동 내용) ☐ (해당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및 활동 내용) ☐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 점검 (반기 1회 이상)</td></tr></table>						지표설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노사협의체가 구성되어 법규에 따라 주기별로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의 형태로 근로하는 종사자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4.6.2	GRI 403-4	ESRS	RBA BM3.1	SMETA 3.5	K-ESG S-4-1	공급망K-ESG S-6-5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8조, 제64조~제66조, 제75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점검사항	점검	☐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점검 (반기 1회 이상) ☐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및 활동 내용) ☐ (도급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및 활동 내용) ☐ (해당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및 활동 내용) ☐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 점검 (반기 1회 이상)				
	지표설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노사협의체가 구성되어 법규에 따라 주기별로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의 형태로 근로하는 종사자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4.6.2	GRI 403-4	ESRS	RBA BM3.1	SMETA 3.5	K-ESG S-4-1	공급망K-ESG S-6-5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8조, 제64조~제66조, 제75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점검사항	점검	☐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점검 (반기 1회 이상) ☐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및 활동 내용) ☐ (도급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및 활동 내용) ☐ (해당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회의록 및 활동 내용) ☐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 점검 (반기 1회 이상)																																	
자거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 협의한 매뉴얼 확인 대표이사, 안전 보건 담당자, 현장 소장, 근로자별 책임과 권한 규정 확인 근로자 의견 수렴 운영 매뉴얼, 안전보건 관련 제안서 확인																																		
2차 실사	현장 근로자가 안전 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 및 의견 개진 할 수 있는 매뉴얼 확인(SHE 경영 및 체계 확인)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 관련 각종 회의체를 활용,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현장 안전 순회 점검 후 조치 완료 여부 확인서 확인 (25.2~25.6)																																		
개선 Comment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위원과 사업주 위원 이 같은 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안전 보건에 관련된 근로자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그 개선 내용을 제시하여 공유하여야 함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위원과 사업주 위원 이 같은 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 의결한 내용을 제시하여 공지하여야 함																																		

S 2-22

근로자 참여



[교육방법] 동영상교육 및 회의방식



순회점검 후 조치완료여부

작성자	대표	관리자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점검일시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점검지	김현정/김현정/김현정
점검부서	관리부	점검결과	
차점내용 현관 출입시 출입입자가 피손부위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칠 우려가 있어 조치함			
조치 전		조치 후	
2025년 05월 07일		2025년 05월 14일	

공통	근로자2 (작업환경)																																													
S 2-23	안전보건교육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안전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table border="1"><tr><td>지표설명</td><td colspan="7">-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포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은 법에서 정하는 목적과 대상에 맞는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td></tr><tr><td rowspan="2">글로벌지표</td><td>ISO 26000</td><td>GRI</td><td>ESRS</td><td>RBA</td><td>SMETA</td><td>K-ESG</td><td>공급망K-ESG</td></tr><tr><td>6.4.6.2</td><td>403-5</td><td>S1-14</td><td>BM2.3</td><td>3.2</td><td>S-4-1</td><td>S-6-5</td></tr><tr><td>국내법</td><td colspan="7">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td></tr><tr><td rowspan="2">점검사항</td><td rowspan="2">점검</td><td colspan="6">☐ 교육 대상별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교육시간 충족 여부 ☐ 관계 법령상 의무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및 필요조치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할 경우 강사 자격 요건 ☐ (건설업 해당 사업장) 관련 안전교육 실시 및 요건 충족 여부 ☐ (유해화학물질·위험물 관련 사업장) 관련 안전교육 실시 및 요건 충족 여부</td></tr></table>							지표설명	-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포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은 법에서 정하는 목적과 대상에 맞는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4.6.2	403-5	S1-14	BM2.3	3.2	S-4-1	S-6-5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점검사항	점검	☐ 교육 대상별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교육시간 충족 여부 ☐ 관계 법령상 의무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및 필요조치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할 경우 강사 자격 요건 ☐ (건설업 해당 사업장) 관련 안전교육 실시 및 요건 충족 여부 ☐ (유해화학물질·위험물 관련 사업장) 관련 안전교육 실시 및 요건 충족 여부					
	지표설명	-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포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은 법에서 정하는 목적과 대상에 맞는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4.6.2	403-5	S1-14	BM2.3	3.2	S-4-1	S-6-5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점검사항	점검	☐ 교육 대상별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교육시간 충족 여부 ☐ 관계 법령상 의무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및 필요조치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할 경우 강사 자격 요건 ☐ (건설업 해당 사업장) 관련 안전교육 실시 및 요건 충족 여부 ☐ (유해화학물질·위험물 관련 사업장) 관련 안전교육 실시 및 요건 충족 여부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교육 대상별 법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시간을 준수하고 있음(교육기관 : 대한안전 교육협회) 무재해 사업장으로 지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 작업자는 법적 요건인 반기 별 6시간을 준수하고 있음 법정 안전교육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음(산업안전교육협회주식회사)																																													
2차 실사	안전보건교육 시 법정 시간을 준수하고, 교육 실시 후 교육 참석자 이름과 서명을 작성한 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있음 TBM회의에서 잠재 위험 요인을 청취하고 작업 전후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있음 사내 교육은 연간 계획에(사무직 6시간/반기, 그 외 직원은 12시간/반기) 의거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개선 Comment	교육 시간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법규에 따라 실시해야 함(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참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기술 인력등은 법정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참고) 안전관리자 등 위험물(S 2-32)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참고																																													

S 2-23

안전보건교육

안 전 교 육 일 지				대표이사	장무
일 자: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사업장명: ㈜ 에스비엘	
교육 대상	1. 정기(반사원) 안전교육		2. 기타()		
교육 인원	구 분	개	날	매	비 고
	대상인원	14	9	5	
	참석인원	14	9	5	
교육 시간	(매주 월요일) 08:00 ~ 09:00				
교육 구분	1. 집합교육 2. 개인교육 3. 위탁교육				
교육 장소	1. 강의실 2. 회의실 3. 위탁교육 4. 기타 ()				
교육 방법	1. 집합교육 2. 개인교육 3. 위탁교육 4. 기타 ()				
교육 내용	교육주제: 중대재해 특별보고 안전 보호구 사용, 작업법에 대한 안전교육 교육내용: - 국민재조 - 안전구호 외자기 (TMR)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련 경찰서장 - 안전교육 (통영상 및 회의) - 교육주제: 중대재해 특별보고 안전 보호구 사용, 작업법에 대한 안전교육 -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련 지적 및 안전조치 - 안전! 안전! 안전! 구조회치고 마무리 - 현장순찰 (관리감독자, 대표이사) - 사전 및 조치계획, 서류정리 - 안전교육 서명				
강사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김두영	실장/관리감독자				
김관훈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이수자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성	남 인
1	㈜ 에스비엘	자	여	
2		경	남	
3		정	여	
4		민	남	
5		석	남	
6		중	남	
7		민	여	
8		간	남	
9		혜	남	
10		준	남	
11		용	남	
12		민	여	
13		철	남	
14		주	남	
15		은	여	
16		재	남	
17		현	여	

공통	근로자2 (작업환경)								
S2-24	위험성평가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위험성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사업장의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개선하는 등 해당 요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4.6.2	403-2		B1.2	3.1	S-4-1	S-5-3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점검사항		점검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여부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확인 및 개선 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반기 1회 이상)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 위험성 감소 계획수립 및 실행 내용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위험성 실시 규정(23.7.10일 제정)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는 절차 있음 위험성 평가(자체수행) 결과 확인, 개선 조치 내용에 관한 기록을 확인 하지 못함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으로 위험성을 추정 하는 프로세스가 있음								
2차 실사	공정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 하고 있음 현장 위험성 평가는 평가회의에서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후 이행확인, 교육, 전파를 하고 있음 위험성 평가 시 안전관리 담당자 등 참가자 기록을 남기고 문서로 관리함								
개선 Comment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장 내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과 유해 요인을 파악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보건 조치를 해야 함 '위험성 평가'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위험성 평가의 내용과 결과 및 개선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위험제로를 위한 지속관리가 필요함								

S 2-24

위험성 평가

사업장 표준문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별책제)

2023. 07. 10.

사업장명 : 주식회사 에스비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별책제)

제1조 (목적)	제2조 (목적)
제3조 (조직)	제4조 (조직)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검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 (조직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표 1> 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위험성평가위원회 (위원장: 대표이사) 성명: [] 위험성평가팀 (팀장: []) 성명: [] 위험성평가조사팀 (팀장: []) 성명: [] 위험성평가관리팀 (팀장: []) 성명: []	위험성평가조사팀 (팀장: []) 성명: [] 위험성평가관리팀 (팀장: []) 성명: [] 위험성평가조사팀 (팀장: []) 성명: [] 위험성평가관리팀 (팀장: []) 성명: []	위험성평가조사팀 (팀장: []) 성명: [] 위험성평가관리팀 (팀장: []) 성명: [] 위험성평가조사팀 (팀장: []) 성명: [] 위험성평가관리팀 (팀장: []) 성명: []
---	---	---

위험성평가 소관부: 사업장명: 위험성평가팀장: []

업종별	근로자2 (작업환경)									
S 2-25	유해· 위험기구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등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법규에서 지정한 모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은 안전인증이 유지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검사주기 만료 30일 전에 안전검사위탁기관에 제출) 및 관리해야 합니다. - 기계·기구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및 상해 위험에 노출될 경우 적절한 물리적 보호장치·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4.6	403-2		B1.1			S-4-3, S-5-2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점검사항		점검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목록 ☐ 안전검사 대상 설비 유효기간 관리 사항 (불합격 시 조치사항 포함) ☐ 위험기구 및 기계에 대한 물리적 보호장치, 안전장치 설치상태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는 법정 검사 대상으로 (2년 1회) 규정대로 안전 검사를 실시 하고 있음 호이스트 3대(1,8톤 1대, 5톤 2대)에 대한 검사 실시 완료(25.5.16) 현장에 설치된 CNC,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작업 전 장비 점검표에 의거 일상 점검을 실시									
2차 실사	작업 현장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방호 장치는 상시 점검 하고 있음(지게차, CNC) 현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외에 제조 설비는 검사 대상이 아님									
개선 Comment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로서 법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고시” 검사 기준에 맞는지 정부가 실시하는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의 검사 주기 만료 30일 전에 안전 검사 신청서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한 경우, 안전검사 증명서가 발급되며 검사한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에 합격 여부를 표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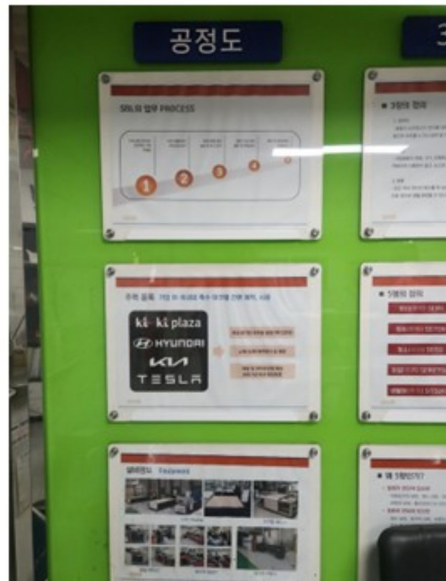
[illegible]

근로자2 (작업환경) > 업종별 > S 2-26

업종별	근로자2 (작업환경)				
S 2-26	안전작업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안전보건표지, 작업절차서·안전수칙 등이 근로자가 쉽게 인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표 설명	지표 설명	-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이동 및 작업 공간 등에는 모든 식별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용도와 규격의 각종 안전보건표지(금지 경고 지시·안내 출입금지 표시 등)가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설치 및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잠재적 안전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작업위험(화기/절단 등)의 작업은 안전한 작업절차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4.6.2	GRI 403-2	ESRS BM3.1	RBA 3.1 S-4-1 S-5-2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1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			
	점검사항	점검	☐ 현장 확인 - 안전구역 확보 상태(작업로 및 통행로 구획선 표시 등) - 안전보건표지 부착 상태 및 적정량 여부 - 배관 유체 흐름 표시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상태 - 작업공간 내 안전수칙 또는 작업절차서 게시 여부 - 위험 장소 또는 설비 등에 LOTO 표시 설치 여부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부착 상태(화학물질 보관소/사용 장소/보관 용기 등) - 안전설계(Fool Proof 및 Fail Safe) 적용 사항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내부 분류 및 관리 목록 ☐ 위험작업 절차서(표준화된 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작업허가제 지침 및 운영 여부 ☐ 자격증 필요 위험작업의 경우 해당 자격증 보유 근로자에 의한 작업 여부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작업 현장내 협착 등 안전표지(금지, 경고, 지시, 안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등이 설치 됨 작업 설비에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 부착,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도 안전표지가 설치 됨 공기구 사용시 작업 절차서(작업 표준서)를 게시하고, 작업 전 안전 점검을 실시 함				
2차 실사	현장작업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설비에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음 안전 보호구에 대한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 체크 리스트를 정리하여 부착 관리하고 있음 공장은 작업 공간과 안전 통로의 구분을 위한 구획선이 잘 정리 되어 있음				
개선 Comment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 내 허용 불가능 위험 요인에 대해 안전 표시 및 표지를 쉽고 명확하게 식별 및 인지하여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장소, 설비, 작업별 위험요인 등을 표시 및 표지 하여 근로자가 위험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함 주요 재해발생 요인별 안전보건 표시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7] 참고 LOTO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참고				

S 2-26

안전작업



S 2-27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 확인서		담당	주최	대표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본인은 지급된 보호구를 작업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였으며 해당된 곳에 보호구를 지급 받았음을 확인하여 아래 서명합니다.

연번	소속	성명	직업(업종)
1	주식회사 세스비엘	박진자	의제 (사무직)
2		김우영	남 제과 (사무직)
3		김현정	의제 (사무직)
4		박승민	남 제과 (사무직)
5		김형석	남 제과 (사무직)
6		김민준	남 제과 (사무직)
7		김민준	남 제과 (사무직)
8		박민준	남 제과 (사무직)
9		박민준	남 제과 (사무직)
10		김민준	남 제과 (사무직)
11		김민준	남 제과 (사무직)
12		최민준	남 제과 (사무직)
13		최민준	남 제과 (사무직)
14		최민준	남 제과 (사무직)
15		최민준	남 제과 (사무직)
16		최민준	남 제과 (사무직)
17		최민준	남 제과 (사무직)

2023년 6월 30일 종료일

개인보호구 지급내역

2023년도

N	지급일자	보호구명	수량	단위	요청자	서명
1	8/12	3M 작업모 (S)	2	개	김민준	
2	8/12	3M 작업모 (S)	2	개	김민준	
3	8/12	3M 작업모 (S)	2	개	김민준	
4	9/15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5	9/15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6	9/15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7	9/15	3M 작업모 (S)	2	개	김민준	
8	9/15	3M 작업모 (S)	2	개	김민준	
9	9/15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10	10/18	3M 작업모 (S)	2	개	김민준	
11	10/18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12	11/1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13	11/1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14	11/1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15	11/1	3M 작업모 (S)	2	개	김민준	
16	11/1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17	11/1	3M 작업모 (S)	2	개	김민준	
18	11/1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19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20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21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22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23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24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25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26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27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28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29	12/17	3M 작업모 (S)	1	개	김민준	
30	3/28	3M 작업모 (S)	2	개	김민준	

인증/비인증 보호구 보유현황

종류	인증/비인증	수량	비고
안전모	인증	12개	안전모 12개 보유
안전모	비인증	12개	안전모 12개 보유
안전모	인증	12개	안전모 12개 보유
안전모	비인증	12개	안전모 12개 보유
안전모	인증	12개	안전모 12개 보유
안전모	비인증	12개	안전모 12개 보유
안전모	인증	12개	안전모 12개 보유
안전모	비인증	12개	안전모 12개 보유
안전모	인증	12개	안전모 12개 보유
안전모	비인증	12개	안전모 12개 보유



공통	근로자2 (작업환경)																																																											
S 2-29	건강진단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table><tr><td>지표설명</td><td colspan="7">-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td></tr><tr><td rowspan="2">글로벌지표</td><td>ISO 26000</td><td>GRI</td><td>ESRS</td><td>RBA</td><td>SMETA</td><td>K-ESG</td><td>공급망K-ESG</td></tr><tr><td>6.4.6.1</td><td>403-3</td><td>S1-14</td><td></td><td></td><td></td><td></td></tr><tr><td>국내법</td><td colspan="7">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 제138조</td></tr><tr><td rowspan="2">점검사항</td><td rowspan="2">점검</td><td colspan="6">☐ 건강진단 대상자 및 건강진단 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포함)</td></tr><tr><td colspan="6">☐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상태</td></tr><tr><td colspan="2"></td><td colspan="6">☐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활동 내역</td></tr></table>							지표설명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4.6.1	403-3	S1-14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 제138조							점검사항	점검	☐ 건강진단 대상자 및 건강진단 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포함)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상태								☐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활동 내역					
	지표설명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4.6.1	403-3	S1-14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 제138조																																																										
점검사항	점검	☐ 건강진단 대상자 및 건강진단 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포함)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상태																																																										
		☐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활동 내역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전 직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100% 받고 있음 건강 검진 결과 유소견자는 없으며, 특이 사항이 있을경우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등의 대응 Process가 있음 사무직의 직원의 장기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하고 있음																																																											
2차 실사	전 직원 대상 매년 건강 검진 수검을 확인 하였으며 검진 결과 2차 검진으로 연계된 유소견자는 없음 검진 결과 특이 사항이 있는 직원에 대한 작업전환,근무시간 단축등의 대응 Process 확인 함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총 8명으로 전원 건강 진단을 받았으며 질병 유소견자는 없음 확인 함(25.5.22)																																																											
개선 Comment	건강 검진 후 사후 관리상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예방이 필요함 사업주는 일반건강 진단, 특수 건강진단, 임시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 건강진단은 일반 건강진단(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연 1회)이며 특수 건강진단 대상으로는 유해인자(178종) 노출 근로자나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키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조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함																																																											

건강진단

[illegible][illegible]

공통		근로자2 (작업환경)						
S 2-30		응급처치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부상을 당했거나 아픈 근로자들에게 1차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응급처치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 부상치료를 위한 구급용구가 비치되어 관리되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보건관리자가 근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 500명 미만의 경우 1명)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4.6.2	403-2	S1-14	B3.2	3.4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점검사항	점검	☐ 응급처치 프로세스(구호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점검 내역 (반기 1회 이상) ☐ 비상구급함(구급용구) 현장 비치 현황 및 상태 확인 ☐ (해당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및 산업보건의 선임(또는 위촉) 여부 확인 ☐ 건강관리실 설치기준 해당 여부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프로세스에 따라 응급상황 대응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제작현장과 사무실에 비상구급함(밴드, 연고, 붕대, 소독약 등)을 비치하고 있음 제작 현장은 위험 요인별 비상대응 절차 및 업무 분장에 의거 구호반 중심의 응급환자 처치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2차 실사		외부기관 응급처치 프로세스 및 매뉴얼 공유하여 관리가 필요함 (보건관리자의 경우 자체 선임(상시근로자 50-500명-1명 이상)할 수도 있고,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선임할 수 있음)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기관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의료기관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 및 들 것, 화상약 등을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개선 Comment		외부기관 응급처치 프로세스 및 매뉴얼 공유하여 관리가 필요함 (보건관리자의 경우 자체 선임(상시근로자 50-500명-1명 이상)할 수도 있고,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선임할 수 있음)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기관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의료기관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 및 들 것, 화상약 등을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S 2-30

응급처치

응급처치CPR 교육

수료기관: 주식회사 에스비엘
 교육기관: 법정의무교육관리센터
 사업자번호: 410-86-54240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상단3번로 91 (용동)
 수료자명: 교육참여명부참조
 감사명: 임태석 감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구분	이수과목	이수시간
1회	응급처치 필요성	10분
1-1회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0분
1-2회	상항 별 응급처치 방법	10분
1-3회	기본 응급처치 실습 (심폐소생술)	30분

2025년 2월 11일

법정의무교육관리센터



S 2-31

근골격계 유해요인

안 전 교 육 일 지		대조회사	담당	
		김지자	김지자	
일 자: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사업장명: ㈜ 엑스비엘				
교육 대상	1. 정기(분기별) 안전교육 2.기타:			
교육 인원	구 분 계 별 대 비 고			
	대상인원	14	9	5
	참석인원	14	9	5
교육 시간	(매주 월요일) 08:00 - 09:00			
교육 구분	1. 집합교육 2. 개인교육 3.위탁교육			
교육 장소	1. 강의실 2. 회의실 3.위탁교육 4.기타 ()			
교육 방법	1. 집합교육 2. 개인교육 3.위탁교육 4.기타 ()			
교육 내용	교육주제: [안전VS위협] 근골격계 질환 예방 · 목적및목표 · 안전문화 의지 (TBM)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련 전달사항 · 안전교육 (동영상 및 PPT) · 교육주제: [안전VS위협] 근골격계 질환 예방 ·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련 지적 및 안전촉지 · 안전: 안전! 안전! 구호외치고 화부리 · 현장순찰 (관리감독자, 대동에서) · 사전 및 조지제책, 서훈장리 · 안전교육 서명			
강사명	소속 및 직위	배 고		
강사명	발행/관리감독자			
강사명	관리감독자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주제: [안전VS위협]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방법] 동영상교육 및 회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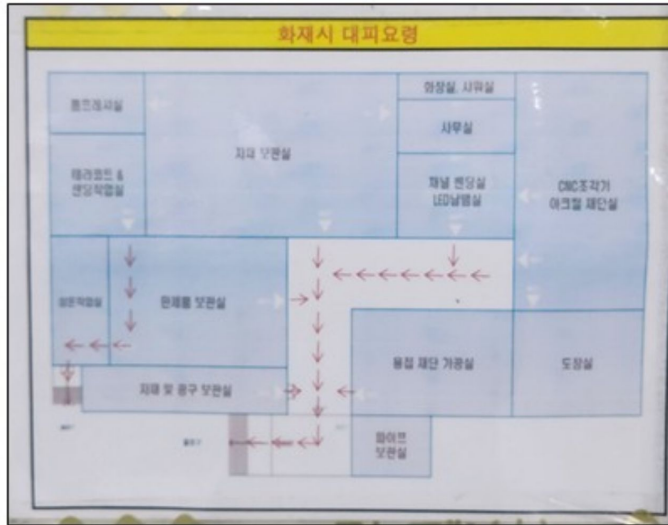


근로자2 (작업환경) > 업종별 > S 2-32

업종별	근로자2 (작업환경)						
S 2-32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유해화학물질 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유해화학물질 또는 위험물로 인한 사람과 환경상의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관련 적절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이 실시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5.2	GRI 403-2	ESRS S1-14	RBA B4.1	SMETA 3.9	K-ESG 공급망K-ESG E-4-2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제115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제13조, 제2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점검사항	점검	[유해화학물질]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변경) 검토신청서, 검토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및 검사결과신고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보고서 및 안전진단결과신고서 ☐ (해당 취급시설) 지역사회 고지사항, 환경책임보험 가입 내역 ☐ (도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내용		[위험물] ☐ (해당 사업장) 예방 규정 작성 및 제출 ☐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여부 ☐ 위험물 안전 관련 기록 및 취급 일시 기록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내용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유해 화학물질 또는 위험물 취급 대상 없음						
2차 실사	1차 실사 내용과 같이 해당 없음						
개선 Comment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기업은 환경부 제출, 지역사회 고지, 정해진 주기에 검사 및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함 현장에 MSDS의 내용을 게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리 대장을 기록 보완해야 함.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공 받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제공해야 함						

공통	근로자2 (작업환경)							
S 2-33	시설·소방안전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사업장 내 각종 시설 및 소화설비 등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화재 등에 대비한 소방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사업자는 건축물 및 소방전기 승강기·가스시설 등의 각종 시설 대상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법적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사업장 내 소방시설 등이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 비상상황에 대비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비상대피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4.6.2			B2.1, B2.3, B2.4	3.9		S-6-2
	국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제27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2조, 제2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기계설비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점검사항	점검	☐ 각종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내용 (자체 또는 외부 위탁) ☐ 관계 법령상 의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점검 및 필요조치 (반기 1회 이상) ☐ 피난안내도(비상 대피로, 비상구, 소화기·소화전 표시 포함) 작성 및 게시 부작 ☐ (해당 사업장) 소방계획서 작성 여부 ☐ 시설별 관련 필수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소화설비(소화기·소화전 등) 설치 현황 및 정기적 점검사항(점검표 포함) ☐ 비상대피훈련(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록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소방 계획서, 피난계획서 작성 확인(시나리오, 훈련계획서 등)하고 있음 정기 안전검사 실시 (24.10 광산소방서장) 분말 소화기(16개), CO2소화기(2개) 점검결과 이상 없음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 실시(1회/연)-소방훈련실시결과와 기록부 확인함							
2차 실사	소방 안전 관리자는 관리자 실무 교육(6시간)이수 확인 (25.4.11) 사업장 비상 대피로 및 비상구 도면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피로를 게시하고 있음 소방 안전 보건 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음							
개선 Comment	소화기 설치 기준: 각 층마다 설치하고 보행거리 20m이내 마다 비치 (20kg 이상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 주기적 점검 실시(1회/월) : 점검표를 소화기에 부착, 내용연수는 10년임. 점검포인트 : 소화기 위치표시, 압력게이지 제조연한, 점검표 확인 *소화전 별도 소방점검(1회/년), 전기안전(1회/월), 승강기안전(1회/년) 법적사항을 확인 피난훈련은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법정 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함							

시설-소방안전



제 2025 - 080851 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업 계 명	(주)에스비엘		
관리번호	광주지방-002050-1 (광산·소방안전관리자)		
직 명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박선자	생년월일	1955.11.22(여)
교 육 일	2025.04.11	이수시간	6시간
교육실시지부	한국소방안전원 광주광역시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실무교육을 참가와 같이 수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취약 계층 방문 점검 시정규직 [별첨 제2호(별첨2)]

[4] **작동점검, 종합점검(1) (1) 화재취약 계층 (2) 그 밖의 동향점검**

소방시설점 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1. [표1] 화재취약 계층 : (소방) 별첨2

화재취약 계층 대상물	연립(합동) 연식2층2동 조각지	대상물 부속(별첨3) 연립
----------------	-------------------------	-------------------

연립연립시점 검사부 부속연립연립시점 부속 (별첨4)

점검기간	2024년 10월 15일 ~ 2024년 10월 15일 (총 점검일수: 1 일)			
점검자	[] 화재취약 계층	[] 화재취약 계층		
	[] 소방시설관리자 (소방)	[] 화재취약 계층		
	[] 소방시설관리자 (소방)	[] 화재취약 계층		
	[] 소방시설관리자 (소방)	[] 화재취약 계층		
	[] 소방시설관리자 (소방)	[] 화재취약 계층		
검사부속 소방 시설	[] 화재취약 계층	[] 화재취약 계층		
	[] 화재취약 계층	[] 화재취약 계층		
	[] 화재취약 계층	[] 화재취약 계층		
점검일정	부속	소방	화재취약 계층	점검일정(별첨5)(12)
	주변 건물(연립)	이 소방	소방시설관리자	제2024-1720
	본 건물(연립)	이 소방	소방시설관리자	제2024-011120
	본 건물(연립)	이 소방	소방시설관리자	제2024-024050

1.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취약 계층 방문 점검, 제2024-0333 및 같은 법 시정규직 제2024-0333 및 제2024-0333에 따라 화재취약 계층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한다.

별첨 5

소방시설관리자, 소방시설관리자, 화재취약 계층 (별첨 5)

강주관력시점 관선소방시설 점검

부속	화재취약 계층
소방시설관리자 소방 화재취약 계층 화재취약 계층	소방시설관리자 화재취약 계층
점검일정	소방시설관리자 화재취약 계층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한다(별첨5) 1부
점검일정	소방시설관리자 화재취약 계층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한다(별첨5) 1부

별첨 5

1. 화재취약 계층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한다(별첨5) 1부
2. 화재취약 계층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한다(별첨5) 1부
3. 화재취약 계층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한다(별첨5) 1부
4. 화재취약 계층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한다(별첨5) 1부

2024-10-15(화) 14:00 ~ 15:00 (총 1시간)

※ 아래의 점검활동 중 해당되는 항목은 해당사항대상을 활동명 제적표시(가) 하세요			
점검활동도	□ □ 공장	□ □ 발전시설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자원순환 관련시설	□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공통

근로자2 (작업환경)

S 2-34

비상대응· 업무연속성

지표 내용
(평가 기준)

비상조치계획과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 또는 비상조치계획 등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실시되고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8.2.2

B2.2

S-6-1

국내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재난관리표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점검사항

점검

☐ 비상조치계획 또는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마련 사항

☐ 비상사태 대응 훈련(교육) 실시 및 조치 점검 내역 (반기 1회 이상)

☐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여부

☐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른 모의훈련 실시 및 성과평가 활동 여부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현장(사업장) 비상시 대비 및 대응(응급처치, 비상대피,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보유

비상시 대비 책임과 권한,업무절차, 보고체계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

재해 발생→상황전파→조기대응→구조 상황에 대응한 조치 및 시나리오 보유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아 수립 보완 필요

2차 실사

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 보유

비상시 대비 책임과 권한,업무절차, 보고체계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

업무 연속성 계획이 수립되어 절차에 의거 모의 훈련 실시 함(25.10.17)

개선
Comment

비상사태의 종류를 파악하여 (화재,정전,물류,홍수,산사태 등) (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종류별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비상사태'는 인명손실, 즉 사망이나 심한 상해를 일으키는 집재력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상조치계획'은 손상이나 손실을 가져오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화재·폭발·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에 대한 완화·제어 조치, 피해 최소화를 뜻하는 넓은 범위의 활동을 의미함

이를 위해 비상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S 2-34

비상대응.업무연속성

회사로고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DOC. NO. PAGE REV. NO. DATE
		1 of 15 - 2025.09.17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비상상황 대응절차		승인자 유효 확인자
안전사고 행동요령		
1. 안전사고발생 2. 주변사람에게 알림 3. 응급조치 시도 4. 화재차출(출구서 119) 5. 비상연락장 가동	안전관리책임자 정두영 H.P: 010-9471-3555 김진출안장님 H.P: 010-8030-0205	
화재사고 행동요령		
1. 화재경보기 작동 2. 119신고 (위치, 건물층수, 화재 종류알림) 3. 소화기로 초기진압 4. 비상연락장 가동	소합대 119 구급대 119 재난안전대 발령(응급호 010-3135-1489) 소합안전관리자 - 정두영 (H.P: 010-9471-3555) - 박선자 (H.P: 010-8865-5577)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조치자	책임 사고 발생 시-연이오
최초발견자	1. 사고 발생을 목격하면즉시 상의의 비상벨을 누른다. 2. 즉각 119에 신고 및 비상벨을 작동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3.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일요시 부상자를 확인하고 옮긴다. 4. 비상연락장에게 작문 보고를 실시한다. 5. 안전관리팀 또는 기타가 도착하면 사고상황 및 환자의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주변근로자	1.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인명명 및 발 발발에 따라 신고 비상벨을 울림으로써 비상 연락체계에 의한 보고를 실시한다. 2. 안전관리팀 또는 기타가 도착하면 사고상황 및 환자의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안전관리팀	1. 사고 발생을 알게 된 순간 긴급작업명령을 실시한다. 2. 관련 기계 기구의 비상 정지 및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3.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확실한 신고한다. 4. 응급조치 긴급대응을 수행한다. 5. (응급조치) 사고상황을 문자 메시지, 사내 SNS를 통해 즉시 통보한다. 6. (응급조치) 피해확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고 화재사태에 긴급 상황을 알린다.
안전관리팀	1. 사고 발생 즉시 출몰하여 근로자의 구조 조치 및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2. 비상연락장에게 작문 보고 및 신고를 실시한다. 3. (응급조치) 건물외부 / 옥상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4. (응급조치)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5. 사고 현상 주변을 통제한다. 6. 현장 주변 긴급조치 표시를 설치한다. 7. (응급조치) 화재발생 등 화재 및 가스, 위험물질 유출에 따라 신속히 차단한다. 8. (응급조치) 피해확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 주민을 대피시킨다. 9. 019 도착 전 안전관리팀의 지령에 최소화된도로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어 인명 피해가 줄어들도록 대응의 시점을 최소화한다. - 부상자의 상태 설명 및 위치 안내 - 사고현장 내 위험사항 및 기계 기구 관련 주의사항
보호조치	비치장소 : 총 방재실 등 장비목록 : 용접, 무전기, 방화장갑, 안전모, 제자본, 구급함, 보호구 등

업무연속성계획(안)

㈜에스비엘

1. 목적

이 계획은 화재, 전선, 강령변환, IT 장애 등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심 업무의 신속한 복구와 지속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에스비엘의 모든 사업장, 공장, 사무실 및 R&D 센터에 적용한다.

3. 비상대응체계

비상대응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비상대응조직 구성:

총괄본부	경영지원팀 (통계, 보고체계 총괄)
안전관리팀	생산관리팀 (직능, 총괄조치, 소화)
복구지원팀	연구개발팀 (물비 및 시스템 복구)
대외협력팀	영업팀 (고객협력사 연락 및 공지)

업종별	협력사							
S 3-36	분쟁광물							
지표 내용 (평가 기준)	분쟁지역 광물이 제품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공급되는 광물(3TG-텅스텐, 주석, 탄탈륨, 금 및 코발트, 기타광물 등)의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급정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6.3.4.1	GRI	ESRS S2	RBA E3.1	SMETA K-ESG 공급망K-ESG S-7-2	
	국내법		-					
	점검사항	점검	☐ 원산지 및 제련소 확인을 위한 자료(확인서, 성적서 등) ☐ 공급망에 대한 실사 관련 자료(계획서, 실사 보고서 등)					
		보조	☐ 분쟁지역 광물 보고서					
확인		☐ 총 사용량 대비 확인된 광물 사용 비율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주요 자재(철판,알루미늄 등)수급 관련 분쟁 지역 광물 제품 사용 해당 사항 없음.							
2차 실사	점검 사항 관련하여 해당 사항 없음.							
개선 Comment	사업주는 분쟁 지역 광물을 사용하는 경우 광물의 원산지 및 광산, 제련소에 대한 정보를 확보, 제공,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분쟁 지역 광물의 사용에 대해 공급망(협력사) 전체를 투명하게 추적하며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함							

공통		협력사						
S 3-37		계약체결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계약 실행 전 계약서를 서면 교부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법의 금지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6.5				8A.1		
	국내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4, 제4조						
	점검사항	점검	☐ 계약서 보존현황, 전자 계약서 사용 시 계약서 관리 페이지 ☐ 계약서 샘플 (부당한 특약 여부 확인) ☐ 입찰/수의 계약 과정 문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					
		보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발주에 필요한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 (주유소 간판 계약서 확인) 모든 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음 (계약서확인) 계약서 확인 결과 부당한 특약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2차 실사	발주시 거래 업체와 공급전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는 전산으로 관리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계약 문구 검토 부당한 내용 없이 작성되고 계약 과정도 잘 이행되어 위법 소지 없음				
개선 Comment	공급망(협력사)와 업무 계약 시 계약 이행 전 서면(전자문서)으로 된 계약서가 발급 되어야 하며 계약 양측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함 계약 체결 시 수급 사업자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또는 법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조직은 계약이 입찰 낙찰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면 안됨				

S 3-37

계약체결

공 사 도 급 계 약 서

Company : [redacted]
 계약일자 : 2022-12-30
 계약번호 : 4130009944
 Amend : 2 (2025-01-12)

본 공사를 도입하여 인하여 발주자측 계약기간의 미착수 없이 개작을 청감하여 상조리조를 바탕으로 일한 사항에
 일 차요고급을 준수함 그 상조리 인계할 것을 약속함.

공급자 상호명 : 주식회사 동소리음 사립지용복합물 : 210-85-52320
 납품처명 : [redacted]

1. 품 목 명 : [라미] 우복소용복합물 (V2정량제(중후판납입))

2. 품 목 조 : [라미] 우복소용복합물

3. 품 목 기 간 : 2022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4. 계 약 금 액 : ₩ 2,379,274,000 / 단합(187~19%) 일로

5. 계약대행보증금 : ₩ 281,742,208 / 계약금액(₩3,450,000)의 10.00%

6. 총지급보증금 : ₩ 281,742,208 / 계약금액(₩3,450,000)의 10.00%

7. 총지급보증기 : [redacted] 중수보증금(₩)은 12.3%

8. Other Charge : 0.00

9. 회 계 상 금 : [redacted] 단합(187~19%)

10. 대 리 자 명 : [redacted]

※ 본 계약서상 모든 사항 [중지서명] 제3조 1항, 2항, [중지서명] 제5조, 7조, 18조에 의하여 효력이 있음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표시합니다.

10. 특약사항

(Revision 2, 25.01.13)

1. 변경항목 : 금액, 기간
 - 변경 전 : [redacted]
 - 변경 후 : [redacted]

2.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 【0】

=====

(Revision 1, 23.05.02)

1. 변경항목 : 상호등 인허가 추가
 - 상호등 인허가(인규/인정) : 95,000원/건

2. 변경사유 : 제주도 조해개발 사항 반영

3.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

첨부 : Cost Impact 【0】

=====

1. 본 계약은 입찰안내서(0221110655), 한정성명회 회의록, 기술검토 사항 및
 입찰서 내용을 포함한다. 단 문서 간 상충되거나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1) 본 주문서
 2) 기술검토 사항
 3) 한정성명회 회의록
 4) 입찰서
 5) 입찰안내서

2. 계약자는 계약발위에 대하여 품질, 일정, 안전관리 등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 최초 작업전 24시간 전까지, 하자행위확약서를 현장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
 후 작업 시작

3. 본 계약에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협약서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서를 포함한다.

4. 계약금액은 예상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계약단가 기준으로 수행실적에
 따라 가감으로 지급한다. 계약단가에는 국내법에 따른 4대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법적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안전관리비 [redacted] 5원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 * 70% * 1.06%(요율)) * 5,349,000(기초액)

5. 대금지급조건은 가성불이며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한다.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VAT포함)의 10% (계약이행보증금률 적용조건)

※ 전자서명용 공인 증명(전자서명용 제3조 1항, 2항, [중지서명] 제5조, 7조, 18조)에 의하여 효력이 있음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표시합니다.

공통	협력사																																																					
S 3-38	계약이행절차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위한 규칙이 정비되어 있고, 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table><tr><td>지표설명</td><td colspan="7">-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법 금지행위 유형의 업무는 업무 매뉴얼에 세부 요건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절한 행위입니다. (1.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2.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3. 부당 반품의 금지 4. 감액의 금지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td></tr><tr><td>글로벌지표</td><td>ISO 26000</td><td>GRI</td><td>ESRS</td><td>RBA</td><td>SMETA</td><td>K-ESG</td><td>공급망K-ESG</td></tr><tr><td></td><td>6.6.6</td><td></td><td></td><td></td><td>8A.2</td><td></td><td></td></tr><tr><td>국내법</td><td colspan="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12조의3</td></tr><tr><td>점검사항</td><td>점검</td><td colspan="5">☐ 업무 매뉴얼 확인 - 특정 물품 구매 요청 가능한 사유 명시 여부 - (위탁 물품의 취소, 변경 수령 거절할 경우) 가능 사유와 절차, 정기적 점검 기록 ☐ 반품 사례(반품 사유) 및 하도급대금 감액 사례(감액 사유) 확인</td><td></td></tr><tr><td></td><td>보조</td><td colspan="5">☐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여부</td><td></td></tr></table>							지표설명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법 금지행위 유형의 업무는 업무 매뉴얼에 세부 요건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절한 행위입니다. (1.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2.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3. 부당 반품의 금지 4. 감액의 금지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6.6				8A.2			국내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12조의3						점검사항	점검	☐ 업무 매뉴얼 확인 - 특정 물품 구매 요청 가능한 사유 명시 여부 - (위탁 물품의 취소, 변경 수령 거절할 경우) 가능 사유와 절차, 정기적 점검 기록 ☐ 반품 사례(반품 사유) 및 하도급대금 감액 사례(감액 사유) 확인							보조	☐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여부					
	지표설명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법 금지행위 유형의 업무는 업무 매뉴얼에 세부 요건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절한 행위입니다. (1.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2.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3. 부당 반품의 금지 4. 감액의 금지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6.6				8A.2																																																
	국내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12조의3																																																				
점검사항	점검	☐ 업무 매뉴얼 확인 - 특정 물품 구매 요청 가능한 사유 명시 여부 - (위탁 물품의 취소, 변경 수령 거절할 경우) 가능 사유와 절차, 정기적 점검 기록 ☐ 반품 사례(반품 사유) 및 하도급대금 감액 사례(감액 사유) 확인																																																				
	보조	☐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여부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공정거래 계약에 따른 거래 관행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 거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공정거래 위원에 준한 표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사 검수 즉시 대금을 지급 받고 있음 거래관계 에서 금지 유형과 금지 행위 예방에 관한 업무 매뉴얼 제정 필요함																																																					
2차 실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준한 표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사 검수 즉시 대금을 지급 받고 있음 거래관계 에서 금지 유형과 금지 행위 예방에 관한 업무 매뉴얼 제정 필요 거래 규모에 따라 특정 거래 금액 이하에 대하여 발주서 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사후의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며 사내에 계약 관련 절차와 양식을 적법 하게 규정 필요																																																					
개선 Comment	조직은 공급사 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규정, 지침, 매뉴얼 등)를 수립하여 특정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사전에 정의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이나 인수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이 사규 및 업무 매뉴얼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업종별	협력사							
S 3-39	대금지급							
지표 내용 (평가 기준)	하도급법 규정에 맞는 대금 지급 정책을 보유하고, 절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계약 실행 이후 대금지급 단계의 하도급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업별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의 내용과 환경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금 조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국내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점검사항	점검	☐ 하도급대금 지급 시스템(전산 또는 사규 및 업무 매뉴얼) ☐ 사업별 대금 지불내역, 지출내역 ☐ 어음 발행내역 및 수수료 지급내역					
		보조	☐ 하도급대금 조정 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현황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발주처 에는 대금 지급일 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고 하나 항목 확인이 필요함.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ESG경영을 위해서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내부 규정을 작성하여 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2차 실사	관련 법을 근거로 관련 규정의 작성이 필요함.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시스템의 정비를 권고함.							
개선 Commen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찾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해야 함							

업종별

S 3-40

지표 내용
(평가 기준)

협력사

ESG요건 전파

ESG 요건에 대한 공급업체 전파 및 이행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글로벌지표

국내법

점검사항

- ESG 경영 요구사항(환경, 사회, 거버넌스)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와 준수 요건)들을 공급업체에 전파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리스크(위험) 관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6

308, 414

S2, G1.2

E4

0.8.5, 10B.4.4

S-6

-

점검

보조

☐ 공급업체에 전파된 ESG 관련 문서들(교육, 공문 등)

☐ 공급업체 평가기준, 계약서 반영 사항

☐ 공급업체 ESG 경영 모니터링 기록

☐ 거래 대기업의 ESG 관련 정보 수신 기록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2차 실사

개선
Comment

공급업체 선정 평가 기준에 ESG수준의 반영이 필요하며 우리 회사의 ESG수준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대기업, 중견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ESG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더욱 열악한 하위 협력 업체까지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적인 개선을 권고함

우리 회사부터 ESG 경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이후 ESG 요건에 대한 공급 업체 전파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의 수립을 권고함

거러하고 있는 지자체, 대기업, 공기업 등으로 부터 주요 ESG 정보를 전달 받으면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협력사에 전파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에게 ESG요건에 대한 규범과 요건을 알리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필요시 협력사 ESG자원을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일반 > 공통 > S 4-41

공통	이해관계자 일반								
S 4-41	개인정보 보호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이해관계자들(임직원 및 고객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임직원 및 고객사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할 때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법률과 규제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7.2.1, 7.7.4	418-1		D6.1	1.1	S-8	S-9-2
	국내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4조, 제15조~제17조, 제21조, 제29조~제31조, 제34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제11조, 제22조~제24조						
	점검사항	점검	☐ 개인정보 보호의 정책, 규정 및 프로세스 확인 -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규정 -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실행여부 - 윤리강령 내 정보보호 항목 등						
보조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임명 여부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규정 보유하고 있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실행 과정에서 정보 유출시 대응 매뉴얼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 해야 함								
2차 실사	개인정보 보호 규정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 규정 내에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관한 원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음 보안 유지 서약서 서명 보관 운영하고 있음								
개선 Comment	사업주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이후 5일 이내에 이를 이해 관계자들에에게 알려야 함 이해관계자 에게 유출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과 같은 방법 통해 알려야 함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조직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별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함								

S 4-41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규정(안)

리엑스비엘

제정·개정 이력

제정/개정일	내용	비고
2025.10.14	최초 제정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리엑스비엘(이하 "회사")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 및 고客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의 종사자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 회사가 보유·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 2 장 개인정보 관리체계

제 4 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경영지원팀장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관리팀 내 지정자 ③ 각 부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5 조(개인정보 처리 원칙) ①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한다. ②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 3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 6 조(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① 임직원 정보: 인사관리, 급여지급, 복리후생 제공 ② 고객 정보: 제품 납품, AS, 홍보 및 거래관리 ③ 협력업체 정보: 계약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관계 유지

제 7 조(수집방법) 서면, 전자문서, 이메일, 홈페이지, 거래 계약서 등 합법적 수단으로 수집한다.

제 4 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제 8 조(보유기간) ① 법원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한다. ② 인사기록, 거래기록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을 따른다.

제 9 조(파기방법) ① 전자적 파일 형태: 복구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② 서면 자료: 파쇄 또는 소각 처리

제 5 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0 조(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정기 교육 실시 ②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접근권한 관리 ③ 연 1 회 이상 개인정보 실태 점검

제 11 조(기술적 조치) ① 비밀번호 암호화, 백신 프로그램 설치 ② 접근통제 시스템 운영 및 로그기록 관리

제 12 조(물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② 외부인 출입제한 및 방문 기록 관리

제 6 장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및 위탁관리

제 13 조(제 3 자 제공 제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제공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업무 위탁 시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 ②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다.

제 7 장 관리보장 및 교육

제 15 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6 조(교육 및 인식 제고) 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신규 입사자는 입사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 8 장 개인정보 유출 및 사고 대응

제 17 조(사고 대응) ①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를 즉시 이행한다. ③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제 9 장 보칙

제 18 조(규정의 개정 및 공표) ① 본 규정은 경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한다. ② 개정 시 회사 내 게시판 및 사내망을 통해 공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 년 10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이해관계자 일반 > 업종별 > S 4-42

업종별	이해관계자 일반									
S 4-42	지식재산 보호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이해관계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보호해야하는 이해관계자(거래처, 공급업체를 포함)의 지식재산을 식별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규정 및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6.7		일반요구 7.7	D3.1		S-8	S-9-1	
	국내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점검사항		점검	☐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원칙, 규정 및 프로그램 확인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특허 등 지식 재산을 취득하고 있으나, 보호할 수 있는 원칙, 규정 수립 보유하고 있지 않음 기술 보호 기준 및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규정 및 관리 원칙 수립 필요 지식 재산 보호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대응을 못함									
2차 실사	향후 지식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체계 및 후속조치 방안 수립 필요 지식 재산권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보호, 특허 등에 대한 내부규정 및 관리원칙 수립 필요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거래처, 협력사, 임직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규정 필요									
개선 Comment	지식재산권 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3가지 종류를 의미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협력회사 및 그 하위 협력회사 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며 조직은 핵심 고객, 근로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등 모든 정보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함 지식재산보호 기관으로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술자료임차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 있어 이 기관을 활용하여 당사와 이해 관계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해야 함									

이해관계자 일반 > 업종별 > S 4-43

업종별	이해관계자 일반							
S 4-43	지역사회공헌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야합니다. - 기업의 상황과 비즈니스와 연관된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S3		11	S-7	S-8-1
	국내법	-						
	점검사항	점검	☐ 사회공헌 전략 체계 (비전, 미션, 슬로건, 중점 분야, 사회공헌 전략 외) ☐ 중장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보유 여부					
보조		☐ 사회공헌 참여 임직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인		☐ 사회공헌 성과 측정 결과 및 기록						
자가진단	예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사회공헌 전략체계(비전, 미션, 슬로건, 중점 분야 등) 및 세부 프로그램 없음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중장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없으며 회사 보유 역량을 고려한 임직원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2차 실사	매출 증대 및 사업 확대에 역량 집중 으로 여력이 없음에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고 있음 사회 공헌 전략체계 수립 및 세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회사 보유 역량을 고려한 임직원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함							
개선 Comment	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사회공헌 전략체계는 사회공헌 비전, 미션, 슬로건 등이 포함되며, 상호 내용에 모순이 없도록 구성해야 함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사회공헌 분야를 선정하고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이 마련되어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주 > 공통 > G 1-01

공통	주주							
G 1-01	의사결정구조							
지표 내용 (평가 기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기업은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의사결정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사결정기구, 견제 기구 구축 및 운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경영방침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2.3.2	2-9, 405-1				G-1, G-2	
	국내법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9조, 제393조, 제393조의2, 제409조						
	점검사항	점검	☐ 정관, 사규에 의거한 이사회 운영 ☐ 이사회 의사결정 ☐ 감사 선출 요건 및 선임 절차, 활동내역 (주요사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심의 결과, 정보접근 권한)					
		보조	☐ 위원회 운영 여부(윤리, 환경, 안전, 인권 등 경영방침 실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					
확인		☐ 사외이사 비율,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건수, 여성 이사 비율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예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정관 및 사규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음 주주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관 제3장에 주주총회 소집,결의,의결,의사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차 실사	회사는 주주는 3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고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이관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임원은 대표 1명이 있음 매년 주주 총회를 통해 신규 사업 참여, 재무제표 승인, 중간 배당,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있음							
개선 Comment	조직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구성 원칙과 권한이 정의되어 있어야 함 이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 이사회 권한이 주주 총회로 이관 되게 됨(상법 제383조 4항). 이사회 구성에는 성별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동일 성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G 1-01

의사결정구조

정 관 주식회사 에스비엘	② 제 1항의 경우 이외에는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 총회를 행사할 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금지하고 또는 기한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한일의 2주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주주의 주주 권리 상고) 당 회사는 주주 또는 임원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설명, 주주 및 임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주주총회 (株主總會) 제16조 (소집) 당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는 해마다 1회, 특별총회 3회 이내로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주시 소집한다. 제17조 (의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을 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8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 또는 보통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과반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1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의결권에 대리행사에 있어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사록에 있어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인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0조 (이사와 감사의 한수) 당 회사의 이사는 1 인 이상을 두고, 감사는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21조 (이사의 선임) ①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집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소집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보수와 회칙규) 임원의 보수 또는 직책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계산 (計算) 제25조 (결산보고서) 당 회사의 결산보고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달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계부제, 결산보고서의 작성비지) ① 당 회사의 서장은 정기 총회 회집 5주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승인과 감사를 받아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제 ①항의 서류는 감사 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전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금의 10%를 이익금의 10%의 10분의 1 이상 2) 불보적립금 액간 3) 주주배당금 액간 4) 임원배당금 액간 5) 후기 이익금 액간 제28조 (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공통	주주							
G 1-02	이사회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심의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회사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이사회에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하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성실하게 심의해야합니다. - 회사는 이사회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2-9				G-2	
	국내법	상법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3						
	점검사항	점검	☐ 이사회 의사록					
보조		☐ 자료제출 요청 건수						
확인		☐ 이사회 출석율, 심의 안전 수, 수정/반대 안전 비율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1차 실사	이사회는 정관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조항)에 따라 회사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심의 하여야 함 이사는 주주 총회에서 선임하며(상법 제382조)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 이사회의 권한이 주주총회로 이관됨(상법 제383조 제4항) 이사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정관 필요함							
2차 실사	회사는 이사회에 대한 정이 정관에 명시 되어 있으나 이사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법적 이사회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83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이사회가 할 일을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							
개선 Comment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함(상법 제383조 1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음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함.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규정됨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법적인 이사회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83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이사회가 할 일을 주주 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주주 > 업종별 > G 1-03

업종별	주주															
G 1-03	주주총회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주주총회에 중요 안건을 보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주주총회이며, 회사는 사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사회 구성원 선출 등 중요 안건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G-3			
	국내법		상법 제363조, 제365조, 제373조, 제382조의 2, 제396조													
	점검사항		점검	☐ 주주총회 회의록 (최근 3년), 주주총회 참여통지서, 주주총회 결과 고고문												
보조			☐ 정관 내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반영 여부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정관 제3장 주주 총회 제16조(소집) 조항에는 정기 주주 총회는 영업 년도 말일 3월 이내 소집하고 임시 주주 총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관 제3장 주주 총회 제 19조(의결권)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 출석,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 주주 총회 회의록(최근 3년)은 확인 하지 못함															
2차 실사	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제1항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날인 또는 서명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함 주주 총회 회의록(최근 3년)은 확인 하지 못함															
개선 Comment	주주총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비정기로 진행할 수 있음.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 갈음 가능함 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제1항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날인 또는 서명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함															

공통	협력사								
G 2-04	윤리경영								
지표 내용 (평가 기준)	반부패(윤리경영)에 관한 회사의 방침 및 관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모든 사업영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 강탈 및 횡령에 대한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부패 정책(윤리강령, 행동지침 등)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반부패에 대한 조사, 처벌, 개선이행절차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6.3	205	G1.3, G1.4	DM	10C.1	G-4-1, G-5-1	G-1-2
	국내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1조의2						
	점검사항	점검	☐ 윤리강령, 행동지침 등의 보유 확인 ☐ 윤리서약서 작성 및 공시 여부 확인		☐ 반부패에 대한 관리(조사, 제재사항, 개선 이행 여부 등) 절차 확인 ☐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반부패(윤리경영)정책 교육 및 관련 내용 공유 확인				
		보조	☐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윤리 현장 및 행동 지침을 미 보유, 윤리 경영에 대한 방침과 관리 프로그램 미 보유 반부패 및 윤리경영 관련 직원교육 실시 필요 윤리서약서 작성, 전 직원 서명 및 공시 필요								
2차 실사	윤리 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 하여 전 직원 서명(25.10.15) 하고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문서로 유지 함 윤리 경영 세부 지침(이해 상충, 부정 청탁, 부패 행위 등)을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윤리 경영 현장 제정 임직원 대상 윤리 경영 방침에 대한 교육 및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전 직원 대상 공유 (25.10.15)								
개선 Comment	주기적으로 윤리강령과 인권경영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전직원과 협력사에게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조직은 사업수행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사항 (뇌물, 강탈, 횡령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강령 혹은 행동지침 등을 수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직은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윤리경영의 실천을 촉구하고 장려해야 함								

G2 -04

윤리경영

윤리경영헌장

㈜에스비엘

㈜에스비엘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통해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정직과 책임의 원칙 아래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 발전을 추구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법규 준수의 투명경영

· 모든 업무는 관한 법령과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수행한다.

· 회계 및 거래 정보를 정확히 보고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2. 공정한 거래와 경쟁

· 협력사 및 고객과의 모든 거래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한다.

· 금품, 향응, 부당한 청탁 등 어떠한 형태의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

3. 이해상충의 방지

·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 가족 또는 친인척의 거래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한다.

4. 임직원의 존중과 인권보호

· 임직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5.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 환경보호, 지역사회 공헌, 협력사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에스비엘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업무 수행의 기준으로 삼아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다짐한다.

㈜에스비엘 대표이사 박 선 자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에스비엘

본인은 회사의 윤리경영헌장 및 행동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업무 수행 시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부당한 청탁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협력업체 및 고객과의 거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5. 윤리경영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의 윤리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서명일 : 2025 년 10 월 15 일

연번	소속	성명	직위	날인
1	에스비엘	박선자	대표이사	박선자
2		김두영	남	김두영
3		김현정	여	김현정
4		박승민	남	박승민
5		김영석	남	김영석
6		김민준	남	김민준
7		이영민	여	이영민
8		박승민	남	박승민
9		배준혁	남	배준혁
10		정재훈	남	정재훈
11		김광용	남	김광용
12		조아라리	여	조아라리
13		서동철	남	서동철
14		이형주	남	이형주
15		안지훈	여	안지훈
16		최상대	남	최상대
17		김영선	여	김영선

협력사 > 공통 > G 2-05

공통	협력사									
G 2-05	제보채널									
지표 내용 (평가 기준)	비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이해관계자(공급업체, 고객사, 고객 등)가 비윤리적 이슈, 이해관계 상충, 고충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공식적인 채널(익명 게시판, 불만 제기 및 건의함, 핫라인 등)을 가지고 있으며, 비윤리적 이슈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해야 합니다. - 회사는 임직원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임직원 친인척 또는 임직원 관계회사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임직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업무배제를 요청하거나 의사결정을 위임하거나, 권한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6.3.6	2-26		DM3	10C.4	G-4-1	G-1-4	
	국내법		-							
	점검사항		점검	☐ 비윤리적 이슈 제보할 수 있는 채널 보유 여부(익명 게시판, 핫라인, 건의함) ☐ 제보자 신원 보호 양식(고충 제보 양식 확인)이나 절차 확인 ☐ 이해관계 상충 처리 절차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이해관계자(공급업체, 고객사, 고객)에 대한 비윤리사항, 고충 및 이슈에 대한 제보 채널이 없음 외부 이해 관계자의 제보 내용,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양식이나 절차 등은 없음 이해관계 상충 처리 절차 없음									
2차 실사	비윤리행위신고 접수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음 이해 관계자의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 절차를 운영 해야 함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한 비윤리자 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 운영 해야 함 비윤리적 이슈 사항의 접수를 위한 사내 게시판, 불만 제기 및 건의함, 핫라인 등을 구축 해야 함									
개선 Comment	조직과 관련이 있는 이해 관계자가 내/외부의 비윤리적인 불법 행위 또는 이슈 사항을 발견했을 시 이와 관련하여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함 비윤리적 이슈 사항의 접수 채널은 사내 게시판, 불만 제기 및 건의함, 핫라인, 제3자 라인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고충 및 비윤리적 이슈가 사내 고충 상담 제도 및 내부 고발자 제도를 통해 제기되었을 경우, 즉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함									

공통	이해관계자 일반								
G 3-06	ESG강령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 강령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 영역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성명서 및 규범(정책, 강령)을 보유하고 이를 게시/배포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7.4.2	GRI 2-22	ESRS	RBA AM, BM, CM, DM	SMETA 10B2.2	K-ESG E-1, S-1	공급망K-ESG
	국내법		-						
	점검사항	점검	☐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성명서 보유, 게시/배포 여부 확인 ☐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관련 정책 및 강령에 대한 수립, 게시/배포 여부 확인						
자가진단	아니오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ESG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ESG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할 것을 권고함. ESG 행동 강령을 수립하여 회사 내에 게시하고 교육할 것을 권고함								
2차 실사	ESG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25.10.14일 제정 함 (환경경영 방침, 사회경영방침, 지배구조방침) ESG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이 필요 함 수립된 ESG 행동 강령에 대해서 회사 내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해야함								
개선 Comment	조직은 ESG각 분야(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실행 의지를 표현하는 정책(선언, 성명서 등)을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표명해야 함 경영진은 연 1회 이상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준수 현황에 대해 검토해야 함 ESG 관련 성명서는 근로자 및 관련 이해 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내 인트라넷,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G3 -06

ESG 강령

ESG 경영지침(안)

㈜에스비엘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에스비엘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임직원 전원 및 협력업체 등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주체에 적용한다.

제 3 조(기본이념)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협력사·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한다.

제 2 장 환경(Environment) 경영

제 4 조(환경경영 방침)

1. 에너지 절감, 자원 재활용,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제조활동을 추진한다.
2. 친환경 소재(저전력 LED, 재활용 알루미늄 등)를 적용한 간판 제형에 앞장선다.
3.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철저히 관리한다.
4. 모든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환경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제 5 조(환경성과 관리)

1. 연 1 회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2. ISO 14001 등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제 3 장 사회(Social) 경영

제 6 조(안전경영)

1. 모든 임직원은 안전, 다량성, 행동의 가치를 존중한다.
2. 어떠한 형태의 자살, 폭력, 괴롭힘, 강요노동,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안전보건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7 조(근로자 복지 및 소통)

1. 임직원의 복지 향상과 일-생활 균형을 보장한다.
2. 정기적인 직원 간담회 및 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한다.

제 8 조(지역사회 공헌)

1.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중소기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제 4 장 지배구조(Governance)

제 9 조(투명경영)

1. 모든 회계와 경영활동은 법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한다.
2.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및 경영회의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한다.

제 10 조(윤리경영 및 반부패)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원칙을 준수하며, 부패·공공수수 등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부패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회사는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제 11 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1.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2.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접근제한을 최소화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제 5 장 실행 및 관리

제 12 조(교육 및 홍보)

1.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ESG 교육을 실시한다.
2. ESG 관련 정책과 성과를 사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13 조(평가 및 개선)

1. ESG 목표 달성도를 연 1 회 평가하며, 개선사항을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다.
2. 평가 결과는 경영회의에 보고하고, 전사 차원의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제 14 조(시행 및 개정)

1. 본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 법령의 개정이나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 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25 년 10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이해관계자 일반 > 업종별 > G 3-07

업종별	이해관계자 일반							
G 3-07	이해관계자 소통							
지표 내용 (평가 기준)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근로자, 관리자, 공급업체, 고객, 경영진 등)들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보유/운영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53.3	2-12		AM3,BM3,CM3,DM3	0.A.1, 10C.8		
	국내법	-						
	점검사항	점검	□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절차 및 운영 여부 확인					
보조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간담회 및 기타행사						

자가진단	해당없음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예
1차 실사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일부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절차 없음 직원들 대상으로는 매월 조례 실시 하고 있으나 고객(발주사,협력사)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통 계획 없음 내부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필요				
2차 실사	이해 관계자 맵 을 작성하여 내부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에 대한 체계를 수립함 이해 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함(2025년 소통 계획 확인) 연간 소통 계획에 의거 이해 관계자들과 정기적 커뮤니케이션을 실행 하고 있음				
개선 Comment	이해 관계자들과 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절차 및 채널을 운영하여 조직 업무 현안 및 ESG 관련 경영, 실행 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이해 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간담회, 설문조사, 협의회, 설명회, 공청회, 컨퍼런스, 상시 의견 접수 채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G3 -07

이해관계자 소통

이해관계자 소통계획

리테스비엘

1. 목적

이 계획은 리테스비엘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2. 이해관계자 구분

구분	세부대상	주요담당자	소통주기	주요내용
내부고객	임직원, 경영진	전무총장, 부지, 안전, 영업지원	월 1 회 이상	사내공지, 게시판, 사내교육, 직원직인명
외부고객	별주자(ESG 전략 등), 공급주	윤도, 남기, 기동혁, 박용숙도	수시/분기	우편 의뢰,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로 조사
협력사	투자자/부품 공급업체	공정거래, 남기철조, 기술공헌	분기	협력사 간담회, 공정거래 협약
지역사회	지자체, 언론주인, 공공기관	환경영향, 교통정체, 안전관리	연 1 회	지역협력체, 분사활동, 환경영향조사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공단, 연구기관	별주자, ESG 과제 수행	수시	보고서, 평가결과, 공문
주주/투자자	주요주주 1 인, 유관기관	각주주, ESG, 경영전략, 투명경영	연 1 회	주주총회, 경영보고서

3. 연간 소통 추진계획 (2025 년)

구분	주요활동	담당부서	시행시기
1 분기	연간 ESG 목표 공표 및 실적률 공표	경영지원팀	3 월
2 분기	협력사 상생 간담회 개최	구매/영업지원팀	6 월
3 분기	별주자 홈페이지로 조사 및 피드백 협의	영업팀	9 월
4 분기	지역사회 환경영향조사 및 성과보고	경영지원팀	11 월
합계	각종제안사항 반영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전 부서	합계

4. 소통성과 평가 및 활용

- 연 1 회 소통성과를 평가하여 ESG 경영성과 보고서에 반영한다.
-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수집하여 자선도 소통계획에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 주요 개선 결과는 연 차별 및 협력사에 공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5. 이해관계자 Map



업종별	이해관계자 일반							
G 3-08	ESG 리스크 파악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기업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리스크(법을 또는 규정 및 고객의 변화,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협력사, 공급회사 등)를 파악하고 최고 경영자와 주요 임원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보유/운영해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7.4.3	2-12	일반공시 4.1	AM, BM, CM, DM		G-1-1	
	국내법							
	점검사항	점검	☐ 경영진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 문서 검토 여부 및 절차 확인 ☐ 개선 프로세스에 대한 기록 및 개선 결과 확인					
자가진단	아니오	1차 현장실사	아니오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경영진의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슈 문서 검토 여부에 대한 프로세스 없음 리스크 범위 및 영역을 갖추고, 연간 리스크를 절차에 따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없음 경영진에서 ESG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2차 실사	회사와 연관된 ESG관련 리스크를 정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경영진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 문서 검토 여부 및 절차 확인이 안됨 리스크 관리 관리 절차에 의거 리스크를 파악하고 경영에 반영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개선 Comment	조직 업무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관점의 리스크를 파악하여 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리스크는 현재 조직의 상황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SG 관점에서의 이슈를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사적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를 보유해야 함							

이해관계자 일반 > 업종별 > G 3-09

업종별	이해관계자 일반							
G 3-09	비재무성과 공시							
지표 내용 (평가 기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지표설명	지표설명		-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평가하고 주요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ESG 정보의 공개방식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공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지표	ISO 26000	GRI	ESRS	RBA	SMETA	K-ESG	공급망K-ESG
					D2.1		P-1	
	국내법	-						
	점검사항	점검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ESG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의 발간 여부 ☐ 주요 ESG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					
자가진단	아니오	1차 현장실사	해당없음	2차 현장실사	아니오			
1차 실사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음 ESG관련 성과를 외부에 공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음							
2차 실사	코스피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의무 공시와 관련 없음 정보 공시 공표 방법은 여건에 따라 상이 함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회사 간행물을 통해 정보 공개 가능함							
개선 Comment	회사는 ESG 관련 정보들을 관리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해야 함 대외 공표 방식은 홈페이지, 사업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G경영보고서) 등이 있으며, 조직 규모 및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또는 복수의 공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ESG 관련 정보는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되고, 공표시기와 주기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나,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되며, 정보 공개 주기가 사전에 공개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4. 결론 및 제안

ESG 추진 전략과 개선과제 Alignment

4-1. ESG 분야별 전략/개선과제

환경 (Environment)	
ESG 부문별 추진전략	개선과제
환경경영목표의 주기적 평가	환경성과 평가체계 고도화 및 주기적 검증 운영
녹색구매방침 강화	친환경 인증 제품 사용계획 수립 및 사용 확대 실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전과정에 자원 재활용 항목 발굴 및 적용으로 자원의 재활용촉진
사회 (Social)	
ESG 부문별 추진전략	개선과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지식재산 보호 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 도입
안전보건체계 내실화, 예방 강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내실화 및 중대재해 예방체계 강화
ESG요건의 공급업체 전파방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내실화 및 중대재해 예방체계 강화
사회공헌 전략 수립	사회공헌 프로그램 체계화로 지역사회와 관계 강화
거버넌스 (Governance)	
ESG 부문별 추진전략	개선과제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구축	이해관계자의 이해 상충등 고충제보 채널과 정기적 소통
윤리적 거래 및 내부신고 체계 강화	윤리현장 운영 내실화 및 내부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도입
ESG관련 리스크 파악	ESG에 대한 정책과 강령, 외부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반영 절차 수립

4-2. ESG 단계별 로드맵

추진영역	단기 (1~2년)	중기 (3~4년)	장기 (5년~)
로드맵	ESG 기반 조성 (시급성, 중요성 우선 추진)	ESG 수준향상	ESG 고도화 구축
환경방안	자원순환 규정 수립 및 실천계획	자원 재활용 확대, 관리체계 내실화	환경경영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실천과제	폐기물 분류, 감축 관리 절차 수립	자원순환 표준 제정, 실적 데이터화	환경경영방침과 연계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사회분야	안전보건 체계 정비	안전보건체계 내실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
실천과제	안전규정 및 시설 보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활동 성과 평가,개선활동	안전 내실화를 통한 안전 수준 향상
지배구조 분야	내부신고 보호체계 수립	ESG 리스크 관리 절차 수립	ESG 추진체계 고도화
실천과제	이해상충 발생시 처리절차 수립	ESG 평가 프로세스구축	ESG 정책,과제도출

4-3. 활동사진

활동사진



1차 현장실사



1차 현장실사



2차 현장실사



2차 현장실사